

기관운영감사

감 사 보 고 서

- 부산진구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감사 -

2018. 5.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2
III. 감사결과	3
1. 감사결과 총괄	3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4
(1) 산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징계·주의·통보)	5
(2) 개발행위허가 기간 연장 업무 등 부당 처리 (징계·주의)	20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자에 대한 계약 업무 등 부당 처리 (징계·주의)	26
(4)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징계·주의)	37
(5) 경력직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부적정 (주의)	45
(6)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적정 (주의)	49
(7) 7급 근속승진 임용 부적정 (주의)	56
(8) 허가기간이 만료된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	59
(9) 법령상 하자 없는 건축허가신청 반려 부적정 (주의)	63
(10)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협의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66
(11) 휴게시설 조성공사 관급자재 검사 부적정 (주의)	69
(12) 당항포관광지 행사대행 위·수탁 계약 체결 등 부적정 (주의)	72
(13) 바다 케이블카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77
(14)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탑 미철거 (주의·통보)	82
(15)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93

(16)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부적정 (주의).....	106
(17)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	109
(18)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수입·지출 등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통보)...	115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남구, 경상남도 사천시·의령군·함안군·고성군은 2010년 이후 2017년 6월 현재까지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운영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사, 주요 사업 및 계약, 인허가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기관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연간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기관운영 전반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 6개 기관에 대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인사, 주요사업, 인허가, 계약 등 주요 취약분야를 감사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이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 6개 기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수행한 기관운영업무 전반을 감사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기존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민원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하였으며, 이후 예비조사(2017. 9. 25.~9. 29.)를 거쳐 2017. 10. 23.부터 같은 해 12. 8.까지 감사인원 11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7. 12. 6.과 12.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 6개 기관 기관장 및 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였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를 거쳐 2018. 5. 10.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¹⁾

1. 지역 및 조직 현황

□ 지역 현황

(단위: 명, km²)

구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진구	남구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인구	331,996	275,588	117,466	27,793	68,427	54,327
면적	46	26	398	482	416	517
행정구역	12동	17동	1읍 7면 6동	1읍 12면	2읍 8면	1읍 13면

자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 6개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직 및 인력

(단위: 개, 명)

구분	합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진구	남구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조직	국·단	9	4	3	-	2	-	-
	실·과 등	110	26	20	24	12	14	14
	직속기관 등 ^{주)}	24	1	3	5	4	6	5
	읍·면·동	88	20	17	14	13	10	14
인력 (정원)	본청	2,443	584	467	494	271	311	316
	직속기관 등 ^{주)}	1,884	332	269	369	285	314	315
	계	4,327	916	736	863	556	625	631

주: 직속기관 등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의 직속기관과 도서관 등의 사업소를 합한 숫자임
 자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 6개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재정현황(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진구	남구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계	24,472	4,332	2,782	5,677	3,778	4,065	3,838
일반회계	20,792	4,105	2,585	4,730	2,726	3,245	3,401
특별회계	3,098	141	140	864	894	641	418
기금	582	86	57	83	158	179	19

자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 6개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42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 명, 백만 원)

구분	합계	징계(인원)	시정(금액)	주의	통보(인원)	현지조치(금액)
건수	42	4(7)	3(607)	24	5	6(8)

주: 의령군 골프장 클럽하우스 매입 관련 사항은 별도처리 중임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고성군은 산지전용허가를 하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1억 원(21건) 및 산지복구비 33억 원(57건) 미징수,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3.3억 원 보증기간 연장 미조치
- 함안군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직계비속 포함)과 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재도 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제외하거나 단축하여 부과
- 사천시 7급 승진대상 의료기술직렬을 간호직렬로, 6급 승진대상 사회복지직렬을 행정직렬로 각각 변경하여 부당 승진임용

이에 대하여 산지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고성군 업무 관련자 1명과 개발행위 허가기간 연장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고성군 업무 관련자 2명, 계약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함안군 업무 관련자 2명, 승진대상 직렬을 임의로 변경하여 승진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천시 업무 관련자 2명에 대해 각각 징계요구하였다.

또한 고성군에 대해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57건에 대해 산지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는 등 총 42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별첨

감 사 원

징계·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산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조 치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내 용

1. 사건 개요

경상남도 고성군은 ① 도로개설·건축신고 등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요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산지전용 협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②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납부받고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예치받는 한편, ③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는 등의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가. 축사시설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업무 처리 부적정

위 관서는 2016. 2. 16. 관내에 ‘염소 축사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을 하기 위한 건축신고 등의 복합민원 신청(신청인: A)을 받고 같은 해 4. 22. 산지전용[전용면적 24,220㎡(임업용: 23,564㎡, 준보전: 656㎡)] 협의 등을 거쳐 같은 해 5. 9.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르면 보전(임업용)산지 내에는

건축물과 「건축법」상의 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5-41호) 등에 따라 시장·군수 등 소하천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²⁾ 등을 받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현황도로(이하 “예외적으로 법정도로로 인정되는 현황도로”라 한다)와 연결하는 경우에는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여도 산지전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2항의 규정 등³⁾에 따르면 진입로와 「건축법」상 도로가 준보전산지 내 진입로 등을 매개로 하지 않고 보전(임업용)산지 내에서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만 50m 이내의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축사 건축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보전산지 내 진입로가 「건축법」상의 도로 또는 예외적으로 법정도로로 인정되는 현황도로와 직접 연결되고 50m 이내의 진입로 설치가 가능한 지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는 위 산지전용 신청부지 내 진입로가 예외적으로 법정도로로 인정되는 현황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하천변 현황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위 현황도로까지 준보전산지 내 진입로를 매개로 전체 진입로 148m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위 신청부지가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진입도로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그대로 산지전용 협의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임업용 산지에 진입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축사가 부당하게 건축되게

2) 「소하천정비법」 제8조 및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 소하천 관리청이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3) 법제처 법령해석례(14-0446, 2014. 12. 11.)

되었다.

나. 보전산지 내 건축신고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업무 처리 부적정

위 관서는 2017. 2. 3. 보전산지(임업용)인 관내에 임업용 단독주택(연면적 84.58㎡)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등의 복합민원 신청(신청인: B)을 받고 같은 해 3. 23. 산지전용 협의 등을 거쳐 같은 해 3. 27.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르면 기존도로(「도로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를 의미)를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축하거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진입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위 임업용 단독주택 건축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도로법」 등 법령에 따른 법정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거나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진입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는 위 건축신고 대상지 인근에 「도로법」 등 법령에 따른 법정도로가 없었고 민원인 소유가 아닌 인근의 타인 소유 임도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겠다고 신고 하였는데도 이를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3. 23. 산지전용 협의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임업용 산지에 타인 소유의 임도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이 부당

하게 건축되게 되었다.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확인 업무 처리 부적정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고,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권자는 산지전용허가 시 복구의무자로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징수하여 세입처리하고 복구비는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받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산지전용허가 시 복구의무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산지전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는 복구의무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여야 하며, 복구의무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거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산지전용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는 관내에 산지전용허가(허가기간: 2013. 4. 8.~ 2014. 3. 31.)를 받은

C가 위 관서로부터 부과받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494,4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등 [별표 1] “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명세”와 같이 2013년부터 2017년 10월 현재까지 납부의무자 21명이 계 214,827,190원(면적: 84,920㎡)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별표 2] “산지전용허가 복구비 미예치 명세”와 같이 예치의무자 57명이 계 3,372,110,000원(면적: 120,744㎡)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고 있었던 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위 관서가 산지전용허가시 부과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복구 의무자로부터 납부받아 세입처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구 의무자가 산지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위 관서가 산지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라. 허가 기간이 만료된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1조, 제44조,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복구 의무자는 산지전용허가 기간 등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에 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산지를 복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구 의무자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산지를 복구하도록 한 후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복구 의무자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복구설

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복구의무자가 산지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행자를 지정하여 산지복구를 대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는 관내에 산지전용허가(허가기간: 2013. 4. 8.~ 2014. 3. 31.)를 받은 C가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인 2014. 3. 21.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산지를 복구하지 않고 있는 등 [별표 3]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지 관련 복구설계서 미제출 명세”와 같이 2014년부터 2017년 10월 현재까지 복구의무자 24명(면적: 36,566㎡)의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산지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위 관서는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36,566㎡의 산지가 건축물 대지 등으로 형질변경된 후 재해예방·경관유지에 필요한 복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2.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내용

위 관서 D는 2015. 1. 1.부터 2017. 11. 2. 현재까지 ○실(2016년 7월부터 □과로 명칭 변경)에서 농·산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산지전용 협의 업무와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 하였다.

가. 산지전용 협의 업무 부당 처리

1) 축사시설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업무의 경우

D는 “1항 가”와 같이 산지전용허가 ‘측사시설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산지전용허가 신청부지 내 진입로가 연결된 위 하천변 현황도로가 예외적으로 법정도로로 인정되는 현황도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 148m 중 준보전산지 내 진입로 103m를 제외하고 보전산지 내 진입로 45m만 검토하여 진입로 설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잘못 검토한 후 2016. 4. 22. 산지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 문서를 기안하여 ▶담당 E의 검토 및 ○실장 F⁴⁾의 결재를 받아 산지전용 협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1항 가”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2) 보전산지 내 건축신고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업무의 경우

D는 위 “1항 나”와 같이 ‘보전산지 내 건축신고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기 소유의 임도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도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시 규정된 진입도로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진입도로가 민원인 소유의 임도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검토한 후 2017. 3. 23. 산지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 문서를 기안하여 ▶담당 G의 검토와 □과장 H(2017. 6. 30. 퇴직)의 결재를 받아 산지전용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1항 나”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 등 산지전용 사후관리 업무 태만

D는 2년 10개월 동안 “1항 다, 라”와 같이 대체산림조성비 부과·징수 및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산지전용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어 「

4) 2016. 6. 30. 퇴직

산지관리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징수하고 산지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비를 예치받는 한편,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는 등의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5. 1. 1.부터 2017. 11. 2. 현재까지 관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6,632,440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는 등 [별표 1] “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명세”와 같이 총 21건 중 20건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관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J)가 복구비 429,650,000원을 예치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는 등 [별표 2] “산지전용허가 복구비 미예치 명세”와 같이 총 57건 중 55건의 복구비 예치 확인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관내에 산지전용허가(2015. 6. 8.~2017. 5. 31.)를 받은 △△산업(대표 K)이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인 2017. 5. 21.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산지를 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있는 등 [별표 3]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지 관련 복구설계서 미제출 명세”와 같이 총 24건 중 23건의 산지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에 따라 “1항 다” 및 “1항 라”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등 의견

1. 관련자 의견

D는 산지전용이 불가한데도 가능한 것으로 협의 업무를 잘못 처리한 사실과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산지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과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을 적용할 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전용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건축신고·도로개설 등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업무를 잘못 처리하였고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를 태만히 한 D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 ① 건축신고·도로개설 등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 업무를 태만히 한 D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징계)
- ②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주식회사 ○○ 등 [별표 1]에 기재된 21건(총금액: 214,827,190원)의 미납자에 대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등 필요한 징수 방안을 마련하고,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주식회사 □□ 등 [별표 2]에 기재된 57건(복구비 미예치 총금액: 3,372,110천 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산지전용의 중지를 명하는 등 적정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산지관리법」 제39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산업 등 [별표 3]에 기재된 24건의 복구 의무자(면적: 36,566㎡)에게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통보)

③ 앞으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산지전용협의 업무를 하면서 산지전용 허가 대상이 아닌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과 E(현 ■면장)와 G(현 ♀면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명세

(단위: m², 원)

일련 번호	허가일자	수허가자	허가지			허가내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미납액		
			읍·면	리	지번	면적	용도	허가만료일	계	국비	군비
1	2013. 4. 8.	C	-	-	-	4,667	단독주택건립 및 진입도로개설	2014. 3. 31.	3,494,400	3,144,960	349,440
2	2015. 6. 3.	△소업 K	-	-	-	3,097	공장건립	2017. 5. 31.	11,365,990	10,229,400	1,136,590
3	2015. 12. 28.	-	-	-	-	630	제중근린생활시설 (소매점공예품 판매점건립)	2017. 11. 30.	3,005,100	2,704,590	300,510
4	2015. 12. 28.	-	-	-	-	659	제중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차점건립	2017. 11. 30.	2,950,930	2,655,840	295,090
5	2016. 1. 7.	(주)○○ 대표이사 I	-	-	-	4,532	제중근린생활시설 (소매점건설안전 용품판매점건립)	2017. 12. 31.	16,632,440	14,969,200	1,663,240
6	2016. 4. 12. (변경) 2017.6.22.	농업회사법인 □□주 대표이사 J	-	-	-	29,619	관광농원건립 및 진입도로개설	2017. 12. 31.	2,880,080	2,592,080	288,000
7	2016.. 5. 12.	-	-	-	-	992	단독주택건립	2018. 4. 30.	4,308,020	3,877,220	430,800
8	2016. 7. 8.	-	-	-	-	4,842	단독주택(11동)건립 및 진입도로개설	2018. 6. 30.	19,921,340	17,929,210	1,992,130
9	2016. 9. 26. (변경) 2017.2.20.	-	-	-	-	3,745	제2중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건립)	2018. 8. 31.	11,342,420	10,208,180	1,134,240
10	2016. 10. 4.	-	-	-	-	4,590	단독주택(7동)건립 및 진입도로개설	2018. 8. 31.	18,846,540	16,961,890	1,884,650
11	2016. 12. 16.	-	-	-	-	3,470	단독(다가구) 주택건립	2018. 11. 30.	13,970,220	12,573,200	1,397,020
12	2016. 12. 21.	-	-	-	-	2,666	단독주택건립	2018. 11. 30.	8,463,760	7,617,390	846,370
13	2017. 4. 5.	-	-	-	-	558	단독주택건립 (1부지)	2019. 3. 31.	2,376,520	2,138,870	237,650
14	2017. 4. 10.	-	-	-	-	147	단독주택건립 (2부지)	2019. 3. 31.	626,070	563,470	62,600
15	2017. 4. 13.	-	-	-	-	3,729	숙박시설건립 및 진입도로개설	2019. 3. 31.	15,934,010	14,340,610	1,593,400
16	2017. 4. 14.	-	-	-	-	299	단독주택건립및 진입도로개설	2019. 3. 31.	1,273,120	1,145,810	127,310
17	2017. 5. 10.	-	-	-	-	40	제1중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진입도로개설	2019. 3. 31.	170,400	153,360	17,040
18	2017. 7. 27.	-	-	-	-	9,991	숙박시설,창고건립 및 진입도로개설	2019. 6. 30.	42,565,040	38,308,540	4,256,500
19	2017. 8. 9.	-	-	-	-	4,885	단독주택(11동)건립 및 진입도로개설	2019. 7. 31.	27,014,050	24,312,650	2,701,400
20	2017. 8. 11.	-	-	-	-	989	단독주택건립	2019. 7. 31.	4,378,300	3,940,470	437,830
21	2017. 8. 17.	-	-	-	-	773	단독주택건립	2019. 7. 31.	3,308,440	2,977,600	330,840
계						83,448			214,827,190	193,344,540	21,482,650

자료: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산지전용허가 복구비 미예치 명세

(단위: m², 천 원)

일련 번호	허가일자	수허가자	허가지			허가내역			복구비 미예치 금액	비고
			읍·면	리	지번	면적	용도	허가 만료일		
1	2014.5.2.	-	-	-	-	460	단독주택 건립	2016.3.31.	12,000	허가기간 만료
2	2014.9.11.	-	-	-	-	186	단독주택 건립	2016.10.31.	4,620	허가기간 만료
3	2015.1.12	-	-	-	-	319	단독주택 건립	2018.11.30.	5,090	
4	2015.2.17.	-	-	-	-	659	단독주택 건립(1부지)	2018.1.31.	9,742	
5	2015.2.17.	-	-	-	-	739	단독주택 건립(2부지)	2018.1.31.	40,000	
6	2015.2.17.	-	-	-	-	185	단독주택 진입도로 개설	2018.1.31.	4,500	
7	2015.3.16	-	-	-	-	4,985	버섯재배시설 건립 (부지:4,852, 도로공제:133)	2018.1.31.	49,060	
8	2015.5.4.	-	-	-	-	911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건립 (10부지)	2018.4.30.	16,800	
9	2015.6.3.	△△산업 K	-	-	-	3,097	공장건립	2017.5.31.	36,000	허가기간 만료
10	2015.6.18	-	-	-	-	766	공동주택(1부지)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	2018.5.31.	284,600	
11	2015.6.18	-	-	-	-	1,385	공동주택 건립 (3부지)	2018.5.31.	170,000	
12	2015.6.18	-	-	-	-	1,492	공동주택 건립 (4부지)	2018.5.31.	243,600	
13	2015.6.30.	-	-	-	-	6,372	단독주택(11동)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	2018.5.31.	173,000	
14	2015.7.15	-	-	-	-	481	단독주택 건립 (가)부지	2018.6.30.	12,700	
15	2015.7.15	-	-	-	-	397	단독주택 건립 (나)부지	2018.6.30.	7,900	
16	2015.7.15	-	-	-	-	491	단독주택 건립 (다)부지	2018.6.30.	8,000	
17	2015.7.15	-	-	-	-	397	단독주택 건립 (마)부지	2018.6.30.	7,200	
18	2015.7.15	-	-	-	-	515	단독주택 건립 (바)부지	2018.6.30.	9,000	
19	2015.9.8.	-	-	-	-	720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	2018.8.31.	11,900	
20	2015.9.8.	-	-	-	-	677	단독주택 건립	2018.8.31.	10,802	

일련 번호	허가일자	수허가자	허가지			허가내역			복구비 미예치 금액	비고
			읍·면	리	지번	면적	용도	허가 만료일		
21	2015.12.28	-	-	-	-	630	제1중근린생활시설 (소매점-공예품판매점)건립	2017.11.30.	18,040	
22	2015.12.28	-	-	-	-	659	제1중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차집)건립	2017.11.30.	16,610	
23	2016.1.7.	(주)○○ 대표이사 	-	-	-	4,532	제1중근린생활시설 (소매점-건설안전 용품판매점)건립	2017.12.31.	187,550	
24	2016.1.19.	-	-	-	-	3,799	단독주택(5동)건립 및 진입도로개설	2017.12.31.	127,820	
25	2016.2.16	-	-	-	-	3,972	제1중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및소매점)건립	2018.1.31.	88,770	
26	2016.3.18	-	-	-	-	900	중중묘지 (자연장지)조성	2018.2.28.	4,290	
27	2016.3.29.	-	-	-	-	3,131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도로개설	2018.2.28.	105,000	
28	2016.4.12	-	-	-	-	29,619	관광농원건립 및 진입도로개설	2017.12.31.	429,650	
29	2016.4.21.	-	-	-	-	273	단독주택 건립(A부지)	2018.3.31.	18,000	
30	2016.4.21.	-	-	-	-	480	단독주택 건립(B부지)	2018.3.31.	38,000	
31	2016.4.21.	-	-	-	-	243	단독주택 건립(C부지)	2018.3.31.	20,000	
32	2016.5.2.	-	-	-	-	658	단독주택 건립(5부지)	2018.4.30.	18,000	
33	2016.5.12	-	-	-	-	992	단독주택 건립	2018.4.30.	17,050	
34	2016.6.1.	-	-	-	-	499	단독주택 건립(1부지)	2018.5.31.	9,000	
35	2016.6.1.	-	-	-	-	498	단독주택 건립(2부지)	2018.5.31.	11,000	
36	2016.6.21.	-	-	-	-	3,059	단독주택(2동)건립 및 진입도로개설	2018.5.31.	74,800	
37	2016.7.11.	-	-	-	-	1,711	단독주택 건립(4부지)	2018.6.30.	26,000	
38	2016.7.27.	-	-	-	-	2,722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2018.6.30.	147,700	
39	2016.9.26	-	-	-	-	3,745	제2중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건립	2018.8.31.	147,800	
40	2016.10.13	-	-	-	-	1,827	단독주택(3동)건립	2018.9.30.	48,820	
41	2016.11.15	-	-	-	-	94	단독주택 건립(1부지)	2018.10.31.	20,000	
42	2016.12.5	-	-	-	-	779	단독주택 건립	2018.10.31.	14,000	
43	2016.12.30	-	-	-	-	4,679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및 진입도로개설	2018.11.30.	154,000	
44	2017.2.17.	-	-	-	-	4,958	단독주택(4동)건립 및 진입도로개설	2019.1.31.	159,800	
45	2017.4.13	-	-	-	-	3,729	숙박시설 건립 및 진입도로개설	2019.3.31.	59,501	

일련 번호	허가일자	수허가자	허가지			허가내역			복구비 미예치 금액	비고
			읍·면	리	지번	면적	용도	허가 만료일		
46	2017.5.8.	-	-	-	-	846	단독주택 건립(1부지) 및 진입도로 개설	2019.4.30.	38,000	
47	2017.5.8.	-	-	-	-	847	단독주택 건립(2부지) 및 진입도로 개설	2019.4.30.	13,515	
48	2017.5.29.	-	-	-	-	400	단독주택 건립 [(다)부지]	2018.10.31.	6,382	
49	2017.5.29.	-	-	-	-	400	단독주택 건립 [(라)부지]	2018.10.31.	6,382	
50	2017.5.29.	-	-	-	-	400	단독주택 건립 [(마)부지]	2018.10.31.	6,382	
51	2017.6.7.	-	-	-	-	660	중증장애인장차 조성	2019.5.31.	14,000	
52	2017.6.13.	J	-	-	-	663	단독주택 건립	2019.5.31.	13,200	
53	2017.7.27.	-	-	-	-	382	단독주택 건립	2019.6.30.	8,200	
54	2017.8.11.	-	-	-	-	989	단독주택 건립	2019.7.31.	22,000	
55	2017.8.17.	-	-	-	-	773	단독주택 건립	2019.7.31.	12,334	
56	2017.8.21.	-	-	-	-	4,589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	2019.7.31.	77,000	
57	2017.8.25.	-	-	-	-	6,373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	2019.7.31.	77,000	
계		57건				120,744			3,372,110	

자료: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지 관련 복구설계서 미제출 명세

(단위: m², 천 원)

일련 번호	허가일자	수허가자	허가지			허가내역			복구비(천원)	
			읍·면	리	지번	면적 (m ²)	용도	허가만료일	금액	예치일자
1	2013.4.8.	C	-	-	-	4,667	단독주택건립 및 진입 도로 개설	2014. 3. 31.	129,900	2013.5.12.
2	2014.2.24.	A	-	-	-	11,613	축사(우사)및야생조수 인공사육사건립	2016. 5. 31.	157,135	2014.10.7.
3	2014.5.2.	-	-	-	-	460	단독주택② 건립	2016. 3. 31.	12,000	미예치
4	2014.5.2.	-	-	-	-	495	단독주택⑥ 건립	2016. 3. 31.	12,000	2015.7.29.
5	2014.5.19.	A	-	-	-	1,078	동식물관련시설 (버섯재배사) 건립	2016. 4. 30.	5,825	2014.5.24.
6	2014.5.26.	-	-	-	-	99	가족자연장지 조성	2016.4. 30.	면제	
7	2014.6.25.	-	-	-	-	304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및 단독주택 건립	2017. 5. 31.	면제	
8	2014.7.24.	-	-	-	-	246	단독주택 건립	2016. 6. 30.	면제	
9	2014.8.18.	-	-	-	-	1,906	단독주택(3가구) 건립 및 진입 도로 개설	2016. 7. 31.	25,034	2014.9.15.
10	2014.9.11.	-	-	-	-	186	단독주택 건립	2016. 10. 31.	4,620	미예치
11	2014.9.19.	-	-	-	-	215	단독주택 건립	2016. 9. 30.	면제	
12	2014.12.11.	-	-	-	-	133	단독주택 건립	2016. 11. 30.	면제	
13	2015.1.21.	-	-	-	-	804	단독주택 건립	2016. 12. 31.	9,600	2015.1.22.
14	2015.1.30.	-	-	-	-	341	아적장 건립	2017. 1. 30.	면제	
15	2015.1.30.	-	-	-	-	657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	2017. 1. 31.	면제	
16	2015.3.17.	-	-	-	-	212	단독주택 건립	2017. 2. 28.	면제	
17	2015.3.23.	-	-	-	-	2,039	공장진출임도로개설 (사도개설)	2017. 2. 28.	27,404	2016.5.20.
18	2015.3.26.	-	-	-	-	4,950	단독주택(5동)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	2017. 2. 28.	143,770	2015.9.21.
19	2015.5.11.	-	-	-	-	43	주차장 조성	2017. 4. 30.	면제	
20	2015.5.11.	-	-	-	-	2,139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	2017. 4. 30.	39,000	2015.5.13.
21	2015.6.3.	△△산업 K	-	-	-	3,097	공장 건립	2017. 5. 31.	36,000	미예치
22	2015.7.20.	-	-	-	-	70	단독주택 건립 (1부지)	2017. 6. 30.	면제	
23	2015.7.20.	-	-	-	-	482	단독주택(3부지)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	2017. 6. 30.	면제	
24	2015.9.30.	-	-	-	-	330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건립	2016. 9. 30.	면제	
계		24건				36,566			602,288	

주: 전용면적 660m² 미만인 경우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다만 복구의무가 있음)

자료: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징계·주의요구

제 목 개발행위허가 기간 연장 업무 등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조 치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내 용

1. 사건 개요

경상남도 고성군은 2008년 9월 주식회사 ▷▷(대표이사 L, 이하 “▷▷”라 한다)가 관내에 조선기자재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계획(사업기간: 2008. 11.~2009. 8. 30.) 승인을 신청한 데 대하여 2009. 1. 8.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09. 7. 30. ▷▷가 1차 사업기간 연장(사업기간: 2008. 11.~2010. 7. 31.)을 신청하자 이를 허가하면서 ▷▷로부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335,110,000원을 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2008. 11. 13.~2010. 7. 31.)으로 제출받았다.

하지만 이후 2010. 11. 12., 2015. 12. 30. 각각 위 업체가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한 데 대하여 이행보증금 335,110,000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연장 허가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도록 하거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9. ▷▷의 장기간 사업중단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취소하였는데도 사업부지 내 토지를 원상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에게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고,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거나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가 ▷▷에 이행보증금 예치를 허가조건으로 개발행위 변경(사업기간 연장)을 허가할 때에는 이행보증금이 예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보증기간이 연장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3.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 2010. 11. 12. 사업기간 연장 업무 등 부당 처리

위 관서 M과 N은 “1항”과 같이 ▷▷가 2010. 11. 10.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연장된 사업기간만큼 보증기간이 연장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채 사업기간 연장(2008. 11. 13.~2011. 7. 31.)을 위한 개발행위(사업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

함에 따라 2010. 11. 12. ▷▷에 대해 이행보증금 335,110,000원을 예치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개발행위(사업기간 연장)를 허가하였다⁵⁾.

그런데 M과 N은 전보 발령일인 2011. 1. 6.까지 ▷▷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 결과 ▷▷가 연장된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⁶⁾를 하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2015. 12. 30. 사업기간 연장 업무 등 부당 처리

위 관서 △읍 O는 2015. 7. 6.부터 2016. 7. 3.까지, ▷실 P는 2015. 7. 6.부터 2016. 7. 3.까지 ○실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2015. 12. 30. ▷▷가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기간 연장 및 이행보증금 예치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하였다.

① O의 경우

O는 ▷▷가 2015. 11. 21.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연장된 사업기간만큼 보증기간이 연장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채 사업기간 연장(2008. 11. 13.~2017. 10. 31.)을 위한 개발행위(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5. 12. 30. 이행보증금 335,110,000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변경)를 허가하는 것으로 문서를 기안한 후 상급자인 P의 검토를 거쳐 ○실장 F(2016. 6. 30. 퇴직)의 결재를 받아 2015. 12. 30. 사업기간 연장을 허가하였다.

5) 당시 M은 2010. 11. 12. 당일 연가 중이었으나 ▷▷의 사업기간 연장 허가 업무를 대신 처리하던 Q로부터 이행보증금 예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사업기간 연장) 허가가 나갔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음

6) 항공사진 관독 결과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옹벽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그런데 O는 이후 전보 발령일인 2016. 10. 20.까지 ▷▷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② P의 경우

P는 2015. 12. 30. O가 기안한 ▷▷의 개발행위(변경) 허가 문서를 검토하면서 ▷▷가 이행보증금 335,110,000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변경) 허가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후 전보 발령일인 2016. 7. 2.까지 ▷▷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였는지, 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하거나 담당자 O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사진] 토지가 훼손되고 형질변경된 사업부지



자료: 고성군 제출자료

이후 위 관서(▽과)는 2016. 12. 9. ▷▷가 장기간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사유로 사업 승인이 취소된 이후 2017. 11. 2. 감사일 현재까지 [사진]과 같이 사업부지 내 18,155㎡의 토지가 훼손되고 형질변경된 채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가 제출한 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위 사업부지를 원상복구하기 위

해서는 군 예산이 별도로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1. 관련자 의견

O 등 관련자 4명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업무를 처리하면서 ▷▷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연장된 사업기간만큼 보증기간이 연장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된 후에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는 등 업무를 잘못 처리한 점을 인정하였다.

2.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에 원상회복 명령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개발행위허가 기간 연장 업무처리를 태만히 한 O, P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개발행위허가 기간 연장을 하면서 사업신청자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연장된 사업기간만큼 보증기간이 연장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O와 P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징계)

② 앞으로 개발행위 기간연장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관련자 M(현 ◁과)과 N(현 ◇과)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징계·주의요구

제 목 수의계약 체결 제한 자에 대한 계약 업무 등 부당처리

소 관 기 관 함안군

조 치 기 관 함안군

내 용

1. 사건 개요

함안군은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데도 아래 [표 1]과 같이 2014. 11. 26. 및 같은 해 12. 22. 함안군의회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군의회의원의 배우자, 이하 “▽▽”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군의회의원의 직계비속, 이하 “◁◁”이라 한다)와 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관서는 ▽▽과 ◁◁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이하 “부정당업자 제재”라 한다)를 하면서도 ▽▽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하였다가 “2015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2016. 1. 28.에서야 뒤늦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였으며, ◁◁ 및 ▽▽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임의로 단축하였다.

[표 1] 수익계약 체결 제한되는 자와 수익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공사명	업체명 (대표이사)	계약일자	계약금액	비고
1	검암천 수해복구공사	▽▽ (R)	2014. 11. 26.	71,410	군의원(V)의 배우자
2	함안천 수해복구공사			33,030	
3	별천마을진입도로 수해복구 공사	◁◁ (S)	2014. 12. 22.	111,387	군의원(V)의 직계비속

자료: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표 2]와 같이 위 관서 ♥센터 등이 발주한 4개 공사를 수익계약방식으로 체결하게 되었으며, ◁◁ 및 ▽▽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정당한 제재기간보다 짧은 제재처분⁷⁾을 받게 되었다.

[표 2]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과의 수익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공사명	업체명 (대표이사)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부서
1	벽산아파트어린이공원 농구장 보수공사	▽▽ (T ⁸⁾)	2015. 6. 12.	19,665	♥센터
2	감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15. 6. 15.	11,196	♣면
3	대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15. 6. 19.	11,770	♣면
4	가야동 배수로 및 안길보수 정비공사		2015. 9. 3.	18,810	♣읍
계				61,441	

자료: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7)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에 따르면 ◁◁ 및 ▽▽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 제한 제재 대상인데도 위 관서는 ◁◁은 1개월, ▽▽은 3개월 제재 처분

8) 군의원(V)의 며느리

대표자)인 경우⁹⁾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표자인 업체가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인 군의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위 관서 ▼면 U는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 위 관서 ☆과장 W는 2014. 4. 8.부터 2016. 2. 28.까지 각각 위 관서 ●과(◀담당)에 근무하면서 계약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주관하였다.

가. U의 경우

1)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계약 부당 체결

U는 2014. 10. 10.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9) 지방계약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없는 군의회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등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를 확인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사실조회 협조” 요청 문서를 기안하여 ◀담당 W와 ●과장 X¹⁰⁾의 결재를 받아 ■과에 송부한 바 있다.

그리고 나서 2014. 10. 22. ■과로부터 ◁◁ 1개 업체만 기재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현황”¹¹⁾ 문서를 통보받고, ◁◁이 군의원인 V¹²⁾의 직계비속(S)이 대표이사로 있다는 사실을 접수·열람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4. 12. 19. “별천마을 진입도로 수해복구공사”(계약금액: 111,387천 원)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 결과 ◁◁이 위 공사의 수의계약 대상업체¹³⁾로 선정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수의계약 대상 업체에서 ◁◁을 배제하지 않았고, ◀담당 W와 ●과장 X의 결재를 받아 같은 해 12. 22.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1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2)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부당 제외

U는 2014. 11.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3호, 2014. 8. 5., 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라 군의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표이사로 있는 등 수의계약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징구하고 [표 1]과 같이 ▽▽과 “검암천 수해

10)2017. 6. 30. 정년퇴직

11)2014. 10. 22. ■과로부터 ◁◁ 1개 업체만 통보받음

12)V는 2016. 6. 29. 함안군지방의회에서 제명의결처분되었음(재임기간: 2014. 7. 1.~2016. 6. 28.)

13)수의계약 견적제출 결과 1순위 업체임

복구공사” 및 “함안천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을 체결¹⁴⁾하였다.

이 후 2015. 1. 29. <<이 위 관서에 “별천마을 진입도로 수해복구공사” 선급금을 신청하여 검토하는 과정¹⁵⁾에서 << 뿐만 아니라 ∇∇도 군의원인 V의 배우자(R)가 대표이사로 있어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확인¹⁶⁾하였다.

이에 따라 2015. 3. 3. U는 <<과 함께 ∇∇에 “수의계약 제재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기안하여 ◀담당 W와 ●과장 X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다.

그런데 U는 2015. 3. 12. <<과 ∇∇로부터 대표이사가 변경¹⁷⁾되어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문을 받고¹⁸⁾ ◀담당 W와 ●과장 X에게 보고하여 이를 함께 검토¹⁹⁾하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16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은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했으므로 수의계약 체결 당시 군의원인 V의 배우자(R)가 대표이사였던 ∇∇의 대표이사 변경 및 공사의 준공 여부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가 될 수 없는 데도 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한 <<과 다르게 ∇∇만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표 3]

14) U는 수의계약 체결 당시 ∇∇로부터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각서를 징구하였고 ■과로부터 통보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현황”에도 ∇∇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군의원인 V의 배우자(R)가 대표이사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함

15) 2015년 1월 말 << 대표자 S가 ●과로 선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왔을 때 ●과 동료 직원이 “V의원의 아들이 왜 왔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여 S이 군의원인 V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고 답변

16) << 대표이사 S가 군의원인 V의 자녀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 대표이사 R이 군의원인 V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함

17) 2015. 3. 3. ∇∇과 <<의 대표이사가 R과 S에서 각각 T(군의원인 V의 며느리)으로 변경

18) 2015. 3. 12. ∇∇뿐만 아니라 <<도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견회신을 하였으나 ●과에서는 ∇∇만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

19) ●과장, ◀담당, 담당자가 구두로 검토한 사항으로 별도 검토 자료는 없음

의 수의계약 공사가 이미 준공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1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3)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적용 부적정

U는 <<의 대표이사가 군의원인 V의 직계비속(S)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표 1]과 같이 2014. 12. 22. “별천마을진입도로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에 대해 2015. 4. 23.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U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서 정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보다 짧은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으로 제재 심의안건을 잘못 작성²⁰⁾하여 같은 해 4. 28.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다.

그 결과 계약심의위원회는 제재기간을 법령에서 정하는 제재기간과 다르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개월 짧은 2개월로 정하고, 1개월을 감경하여 1개월로 확정 의결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1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나. W의 경우

1) 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수의계약 부당 체결

W는 “3 가 1)항”과 같이 담당자 U가 2014. 10. 10. 기안하여 결재를 올린 “수의

20)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6호(지방계약법 제33조 수의계약 체결할 수 없는 자인데 이를 위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의 18을 적용하여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U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의 16(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6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16으로 착각하였다고 답변)을 적용하여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으로 잘못 적용함

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사실조회 협조” 요청 문서를 검토한 바 있고, 같은 해 10. 22. ■과로부터 접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현황” 문서를 열람하여 < <의 경우 군의원인 V의 직계비속(S)이 대표이사로 있어 함안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W는 U가 2014. 12. 19. 기안하여 상신한 “별천마을 진입도로 수해복구 공사” 수의계약 관련 문서를 검토하면서,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가 <<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걱정된 것으로 검토한 후 ●과장 X의 결재를 받아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2)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부당 제외

W는 담당자 U로부터 2015. 1. 29. <<과 함께 군의원 V의 배우자(R)가 대표이사로 있는 ▽▽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같은 해 3. 3. U가 기안한 “수의계약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에 결재하였다.

그런데 W는 2015. 3. 12. U로부터 ▽▽의 경우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문을 보고받고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3 가 2)항”과 같이 ▽▽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3)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적용 부적정

W는 담당자 U와 위 관서 ●과 계약업무 담당자 Y가 각각 2015. 4. 23.과 2016. 1. 19. 군의원 V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과 ▽▽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W는 U가 <<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76조 별표 2의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이 아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으로 잘못 작성하였는데도 U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과장 X의 결재를 받아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가 <<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을 법령에서 정하는 제재기간(5개월 이상 7개월 미만)과 다르게 2개월로 정하고 1개월 감경하여 1개월로 의결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한편, W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인 V의 배우자(R)가 대표이사인데도 [표 1]과 같이 함안군과 “검암천 수해복구공사” 및 “함안천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한 ▽▽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이 지적된 이후 2016. 1. 19. 당시 담당자인 Y가 ▽▽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검토하면서도 Y가 <<과 동일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제재기간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으로 작성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과장 X의 결재를 받아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가 ▽▽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을 법령에

서 정하는 제재기간(5개월 이상 7개월 미만)과 다르게 3개월로 의결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1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1.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1) U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인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우선 제출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와 같이 처리하였고,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인데도 제외한 것은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해당 공사도 이미 준공되어 제외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을 단축한 것은 착오로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U는 2014. 10. 22. ■과로부터 ◁◁의 대표이사가 V 군의원의 직계비속이라는 사실을 통보를 받아 ◁◁이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부정당업자 제재는 대표이사 변경 및 해당 공사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해야 한다는 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담당자로서 제대로 확인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U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W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인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에 결재를 상신하여 별도로 검토한 사항은 없었고,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인데도 제외한 것은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해당 공사도 이미 준공되어 담당자와 ●과장이 함께 의논하여 제외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을 단축한 것은 담당자가 작성해 온 자료를 그대로 믿고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W는 U가 2014. 10. 10. ■과에 사실조회 요청한 문서와 ■과로부터 같은 해 10. 22.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현황” 문서를 직접 결재·열람한 사실이 있고, 수의계약 체결도 W의 기억과 달리 U가 계약 체결 전에 계약 상대방에 대한 자료를 미리 상신하여 이를 결재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는 점, 부정당업자 제재는 대표이사 변경 및 해당 공사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해야 한다는 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은 U와 Y가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을 때 관련 법령을 확인하였더라면 잘못 작성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확인하지 않은 W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관계기관 의견

함안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에 대한 계약업무 등을 처리하면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계약업무처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에 대한 계약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U, W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①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U와 W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징계)**

②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면서 제재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하거나 제한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관련자 ●과 Y(현 ▲면)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 사 원

징계·주의요구

제 목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사천시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1. 사건 개요

사천시는 6급 사회복지·시설(토목) 및 7급 의료기술 직렬 등에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2014. 7. 21. 및 2016. 6. 16. 7급 사회복지·시설(토목) 직렬과 8급 의료기술 직렬을 승진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직급별 승진대상 직렬 선정(안)’을 각각 확정하고서도 같은 날 정기인사계획은 사회복지·시설(토목) 및 의료기술 직렬을 행정 및 간호 직렬로 각각 변경한 후 ‘승진예정인원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²¹⁾ (이하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 관서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승진대상 직렬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7급 행정 직렬(1명)과 8급 간호 직렬(1명)이 각각 6급 및 7급으로 승진임용되었다.

2. 관계 법령(판단 근거)

21) 승진후보자명부는 법정용어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 등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명부이고, 승진후보자서열명부는 법정용어는 아니나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직급·직렬·직류별 승진예정인원에 따라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명부를 말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5급 이하 지방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²²⁾

이에 따라 위 관서는 결원이 발생한 직렬(복수 직렬 포함)을 우선적으로 승진대상 직렬로 선정하되, 승진 인사계획 수립 시 직렬별 최초·현 직급 임용일, 여성공무원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방침을 받아 직급별로 승진대상 직렬 및 인원을 결정한 후 해당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직원 승진심사를 위한 정기인사계획 및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임용권자인 시장이 정한 직급별 승진대상 직렬 선정(안)에 따라 승진대상 직렬을 선정하여야 하고, 임의로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7급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위 관서 ◆실 Z는 2014. 1. 2.부터 2016. 6. 30.까지, 위 관서 보건소 ♠과장 AA는 2015. 1. 2.부터 2017. 1. 31.까지 각각 위 관서 ♣국 ♥과(★팀)에서 업무 담당자 및 팀장으로서 각각 공무원 승진임용 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2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1항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에 따르면 5급 행정직군의 직렬들(지방행정, 지방사회복지등)은 4급 승진 시 지방서기관으로, 5급 기술직군의 직렬들(지방공업, 지방시설 등)은 4급 승진 시 지방기술서기관으로통합운영하도록되어 있어 지방공무원 4급 승진은 같은 직군내 바로 하급 공무원중에서 임용

1) Z의 경우

Z는 2016. 6. 16. “2016년 상반기 명예퇴직 등 결원에 따른 직급별 승진대상 직렬 선정(안)”을 작성한 후 ★팀장 AA, ♥과장 AB²³⁾, ♣국장 AC²⁴⁾, 부시장 AD²⁵⁾의 검토를 거쳐 7급 승진대상에 의료기술 직렬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시장의 결재²⁶⁾를 받았다.

그런데 Z는 같은 날인 2016. 6. 16. “2016년 하반기 정기 인사계획(안)” 및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는 시장이 정한 “2016년 상반기 명예퇴직 등 결원에 따른 직급별 승진대상 직렬 선정(안)”의 7급 승진대상 직렬은 의료기술 직렬인데도 위 직급별 승진대상 직렬 선정(안)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당초 ★팀에서 의료기술 직렬이 아닌 간호 직렬을 7급 승진대상 직렬로 검토하였다는 사유로 시장이 정한 위 직급별 승진대상 직렬 선정(안)과 다르게 7급 승진대상을 간호 직렬로 변경하여 작성하였고, 이를 시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채 ★팀장 AA, ♥과장 AB와 ♣국장 AC, 부시장 AD의 결재를 거쳐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Z는 2016. 6. 1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는 7급 간호 직렬 2명²⁷⁾으로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결과 의료기술 직렬을 간호 직렬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승진임용대상에 포함될

23)2017. 6. 30. 퇴직

24)2016. 6. 30. 퇴직

25)2017. 7. 10. 퇴직

26)직급별 승진대상 직렬 선정(안)은 직급별 승진대상을 공란으로 표시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이 대상 직렬과 인원을 수기로 표시하여 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됨

27)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7급 간호 직렬이 2명임

수 없었던²⁸⁾ ♠과 간호 8급 CJ가 승진대상자로 결정되어 2016. 7. 1. 7급으로 승진임용되었고, 반면 시장이 승진대상 직렬로 정한 의료기술 직렬 8급 CK는 승진심사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

2) AA의 경우

AA는 2016. 6. 16. Z가 “2016년 상반기 명예퇴직 등 결원에 따른 직급별 승진대상 직렬 선정(안)”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자 당시 ♥과장 AB와 함께 시장에게 대면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시장이 직접 7급 승진대상 직렬에 의료기술 직렬을 선정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AA는 같은 날인 2016. 6. 16. Z가 7급 승진대상 직렬을 의료기술 직렬이 아닌 간호 직렬로 작성하여 “2016년 하반기 정기 인사계획(안)” 및 서열명부를 보고하였는데도 자신이 시장의 결재를 받은 위 직급별 승진대상 직렬 선정(안)대로 직급별 승진대상 직렬이 작성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도 간호 직렬로 결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는 ♥과장 AB와 ♣국장 AC, 부시장 AD의 결재를 거쳐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AA는 Z가 의료기술 직렬을 누락한 채 간호 직렬 2명으로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한 데 대해서도 이를 걱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후 2016. 6. 1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3항 가. 1)항”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28) 위 관서는 의료기술 6급 결원이 발생한 데 대해 의료기술 직렬을 7급 승진대상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직렬을 승진임용한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위반임

나) 6급 승진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위 관서 ■과 AE는 2011. 7. 14.부터 2014. 7. 30.까지 ◎국 ■과(★팀)에서 공무원 승진임용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14. 7. 21. “2014년 상반기 명예퇴직 등 결원에 따른 직급별 승진대상 직렬 선정(안)”을 작성하고 ★팀장 AF, ■과장 AG, 부시장 AH의 결재를 거쳐²⁹⁾ 6급 승진대상에 사회복지 직렬 1명과 시설(토목) 직렬 1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그런데 같은 날인 2014. 7. 21. 부시장 AH³⁰⁾(2015. 12. 31. 퇴직)가 6급 사회복지·시설(토목) 직렬 승진인원을 행정 직렬 승진인원으로 변경(7명→9명)하여 정기인사계획(안) 및 서열명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자, AE는 2014. 7. 21. 6급 승진대상 직렬로 확정된 사회복지·시설(토목) 직렬을 임의로 다른 직렬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시장 AH에게 승진대상 직렬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시장의 결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당시 ★팀장인 AF 및 ■과장 AG에게 6급 승진대상 직렬인 사회복지·시설(토목) 직렬을 행정 직렬로 변경하라는 부시장 AH의 지시가 있다는 사실조차 보고하지 아니한 채 6급 사회복지 직렬 1명과 시설(토목) 직렬 1명 계 2명을 행정 직렬 승진인원으로 변경하여 “2014년 하반기 정기 인사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이 사실을 모르는 ★팀장 AF 및 ■과장 AG의 결재 등을 거쳐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29) 당시 ♣국장은 공석이었음

30) 2015. 12. 31. 퇴직

그리고 나서 AE는 2014. 7. 25.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사회복지·시설(토목) 직렬 승진후보자 서열명부가 아닌 6급 행정 직렬 승진후보자 서열명부(32명³¹⁾)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 직렬 1명과 시설(토목) 직렬 1명 등 계 2명을 행정 직렬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승진임용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던³²⁾ 송과 행정 7급 AI가 승진임용대상자로 결정되어 2014. 7. 31. 6급으로 승진임용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1.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Z와 AA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당초 ★팀에서 검토했던 7급 승진대상은 의료 기술 직렬이 아닌 간호 직렬이었으나 시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료기술 직렬로 결재를 잘못 받은 것이고 이에 따라 간호 직렬이 승진대상 직렬이라고 판단한 후 정기 인사계획(안) 및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한 것이며, 직급별 승진대상 직렬 선정(안)대로 정기인사계획(안) 및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착오로 인한 것이지 고의로 승진대상 직렬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Z와 AA는 ① ★팀에서 승진임용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이전부터 시장이 직접 수기로 기재한 직급별 승진대상 직렬 선정(안)에 따라 정기인사계획(안) 및 승진 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승진임용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점, ② 직급별 승진대상 직

31) 6급 행정 직렬 승진예정인원인 7명에 대한 서열명부는 26번 $[(7-5) \times 3 + 20]$ 까지임

32) AI는 6급 행정 직렬 서열명부가 28번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 관련 [별표 4]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에 따른 승진임용범위(1~26번)에 포함되지 않음

렬 선정(안)에 따라 정기인사계획(안) 및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7급 승진대상 직렬이 간호 직렬이 아닌 의료기술 직렬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승진대상 직렬을 간호 직렬로 변경한 후 정기인사 계획(안) 및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한 점, ③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시장은 의료 기술을 간호직렬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사람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시장이 정한 직급·직렬(직류)별 승진대상 직렬(안)과 다르게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임의로 변경하여 인사위원회에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당초 시장이 정한 7급 승진대상 직렬을 임의로 변경한 후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부당하게 작성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정당한 승진임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게 하는 등 7급 승진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Z, AA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① 승진대상 직렬로 선정되지 않은 직렬을 승진임용하도록 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Z와 AA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징계)

② 앞으로 승진대상 직렬로 선정되지 않은 직렬을 승진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관련자 ●국 ■과 AE(현 ◆주민센터)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경력직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안군

조 치 기 관 함안군

내 용

1. 업무 개요

함안군은 2014. 6. 13.과 2014. 11. 28. 채용공고를 한 후 2014. 7. 1.과 2015. 1. 5. 비서요원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계약기간 4년)과 정책개발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계약기간 2년) 각 1명을 채용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경력기준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시험요구일³³⁾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관서는 2014. 6. 13.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등과 2014. 11. 28.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시 ‘7급 또는 7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등으로 각각 경력을 기준으로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였다.

33) 시험공고 등을 통해 채용시험을 요구한 날로 채용공고일과 동일함

따라서 위 관서는 비서요원 분야 및 정책개발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경력 기준으로 채용할 때에는 경력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시험요구일(2014. 6. 13. 및 2014. 11. 28.) 현재 퇴직 후 3년 이내인 응시자가 지원하도록 임용요건을 정하여 채용공고를 하고, 이에 따라 응시자의 서류를 심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비서요원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부적정

위 관서 ◎과 AJ와 ●담당 AK는 2014. 6. 12. 비서요원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빠뜨린 채 채용공고를 작성하였고, ◎과장 AL의 결재를 받아 같은 날 공고하였다.

그리고 AJ와 AK는 2014. 6. 24. 위 채용공고에 따라 응시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면서 비서요원 분야에 응시한 AM의 경우 2001. 5. 21.부터 2003. 2. 21.까지 구 ■■증권에서 투자상담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여 약 11년 동안 관련 분야 경력이 없는데도 적격으로 서류전형 평가표를 잘못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고 ◎과장 AL 및 부군수 AN³⁴⁾은 그대로 결재한 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AM은 2014. 6. 25. 면접시험을 거쳐 같은 날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 2014. 7. 1.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으로 임용되었다.³⁵⁾

34) 2016. 10. 31. 퇴직

35) 2017. 7. 25. ●단으로 전보 발령

2) 정책개발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부적정

위 관서 ◎과 AO와 ●담당 AK는 2014. 11. 25. 경력기준으로 지원하려는 응시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임용요건을 빠뜨린 채 채용공고를 작성하였고, ◎과장 AL과 부군수 AN은 위 채용공고를 그대로 결재한 후 같은 해 11. 28. 공고하였다.

그리고 AO와 AK는 2014. 12. 11. 위 채용공고에 따라 응시자들이 제출한서류를 심사하면서 정책개발 분야에 응시한 AP의 경우 1986. 9. 10.부터 1992. 2. 20.까지 경상남도 울산시(현 울산광역시)에서 상수도 및 노사 업무를 담당하거나³⁶⁾, 1992. 7. 1.부터 2004. 5. 2.까지 경상남도에서 선거 및 공무원 조직관리(교육훈련 포함)를 담당하다가³⁷⁾ 퇴직하여 2014. 11. 28. 채용공고 당시까지 약 10년 7개월 동안 관련 분야 경력이 없는데도 적격으로 서류전형 평가표를 잘못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고 ◎과장 AL 및 부군수 AN은 그대로 결재한 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AP는 2014. 12. 12. 면접시험³⁸⁾을 거쳐 같은 해 12. 15.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 2015. 1. 5.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으로 임용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함안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충족하는 동시에 퇴직 후 3년 이내인 사람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36) AP는 이 기간 동안 기능직공무원(10급)으로 근무하였음

37) 위 기간 중 7급 상당 이상으로 공무원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1995. 7. 1.부터 2004. 5. 2.까지임

38) 서류전형을 통과한 4명의 지원자중 3명이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AP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는데 불합격한 2명 중 1명은 퇴직 후 3년 이내 응시요건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정책개발(연구)분야 경력이 있어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음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 ① 앞으로 경력을 기준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위배되게 퇴직 후 3년이 지난 자를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남구 등 [별표] 기재 4개 기관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남구 등 [별표] 기재 4개 기관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남구 등 4개 기관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의 최종서열은 평정단위별(실·국 등) 서열명부, 평정단위별 업무비중, 업무추진실적, 평정단위 간 형평성, 평정대상자의 특성,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제출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근무성적평정의 최종서열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이하 “평정단위 순위”라 한다), 평정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같은 평정단위 순위가 최종 서열결정시 변경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부산광역시 남구 ○국 ●과 AQ는 2013년 11월경 “2013년 하반기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최종서열(안)”을 작성하면서 ○국 ■과 지방세무 7급 3순위자인 AR이 같은 평정단위인 ○국 ○과 지방세무 7급 2순위자인 AS보다 평정단위 순위가 후순위이므로 최종서열에서 AS보다 앞서게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AR을 최종서열 3위(평정점 67.8점)인 AS보다 평정점 2.2점이 높은 최종서열 1위(평정점 70.0점)로 조정하여 2013. 11. 26. 개최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되게 하는 등 [별표 1] “근무성적평정 순위 부당 변경 명세”와 같이 부산광역시 남구 등 4개 기관의 근무성적 평정 최종서열(안) 작성 담당자인 AQ 등 4명([별첨]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명세”)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지방세무 7급 AR 등 총 77명의 근무성적평정 최종서열을 부당하게 변경하였다.

그 결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지방세무 7급 AR 등 77명의 대상자가 근무성적평정상 선순위와 후순위가 바뀌어 최종 평정점을 받게 되는 등 전체 평정단위 순위가 부당하게 변경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부산광역시 남구 등 4개 기관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같은 평정단위의 후순위자가 선순위자보다 최종서열에서 앞서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등 [별표] 기재 4개 기관장은

① 앞으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을 위배하여 같은 평정단위 후순위자의

최종서열이 선순위자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근무성적평정 순위 부당 변경 명세

기관	직렬(직급)	평정시기	국	과	성명	부서 서열	국 서열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종서열	평정점
부산광역시 남구	세무 (7급)	2013년 하반기	국	과	AR	1위	3위	1위	70.0점
					-	3위	5위	7위	62.8점
					-	4위	8위	9위	60.6점
					-	5위	11위	10위	59.5점
					-	6위	12위	11위	58.4점
					-	7위	16위	13위	56.2점
				과	-	1위	1위	2위	68.9점
					AS	2위	2위	3위	67.8점
					-	3위	6위	5위	65.6점
					-	4위	7위	6위	63.9점
					-	5위	9위	8위	61.7점
					-	6위	10위	12위	57.3점
					-	7위	13위	14위	55.1점
					-	8위	14위	15위	54.0점
					-	9위	15위	16위	52.9점
소계					15명				
부산광역시 진구	행정 (6급)	2014년 상반기	-	-	-	12위	39위	149위	36.4점
					-	13위	40위	147위	37.0점
	속기 (9급)	2015년 하반기	-	-	-	-	1위	2위	63.9점
					-	-	2위	1위	52.9점
	행정 (7급)	2017년 상반기	-	-	-	1위	1위	62위	62.1점
					-	2위	2위	47위	60.0점
소계					6명				

기관	직렬(직급)	평정시기	국	과	성명	부서 서열	국 서열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종서열	평정점	
사천시	행정 6급	2014년 하반기	♣국	-	-	2위	18위	39위	59.8점	
				-	-	2위	19위	32위	61.2점	
				-	-	1위	20위	29위	61.8점	
					-	2위	21위	30위	61.6점	
					-	3위	22위	31위	61.4점	
	보건 6급		-	-	-	2위	5위	4위	56.0점	
				-	-	3위	6위	7위	47.0점	
				-	-	3위	4위	5위	53.0점	
					-	4위	7위	8위	44.0점	
					-	5위	8위	9위	41.0점	
	보건 진료 6급		-	-	-	-	3위	3위	4위	59.0점
					-	-	4위	4위	5위	56.0점
					-	-	5위	5위	3위	62.0점
					-	-	6위	6위	8위	47.0점
					-	-	7위	7위	10위	41.0점
		-			-	8위	8위	6위	53.0점	
		-			-	9위	9위	7위	50.0점	
		-			-	10위	10위	9위	44.0점	
	농촌 지도사	-	-	-	-	10위	18위	19위	48.0점	
				-	-	7위	19위	18위	49.0점	
	행정 7급	-	-	-	-	4위	15위	55위	56.2점	
				-	-	5위	16위	54위	56.4점	
	시설 6급	2015년 상반기	♣국	-	-	1위	2위	5위	50.0점	
				-	-	1위	3위	3위	58.0점	
	보건 6급	2015년 하반기	-	△과	-	-	6위	8위	11위	41.0점
					-	-	7위	9위	10위	44.0점
	소계					27명				

기관	직렬(직급)	평정시기	국	과	성명	부서 서열	국 서열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종서열	평정점		
고성군	보건 7급	2013 하반기	-	-	-	2위	-	1위	70.0점		
					-	1위	-	2위	63.0점		
	△읍 사무소			-	3위	-	40위	48.0점			
				M	4위	-	38위	49.6점			
	행정 8급			-	1위	-	44위	51.5점			
				-	2위	-	43위	52.0점			
	보건진료 6급	2014 상반기	-	-	-	2위	-	3위	63.8점		
					-	3위	-	2위	66.9점		
					-	4위	-	6위	57.6점		
					-	6위	-	10위	45.2점		
					-	7위	-	4위	63.8점		
					-	8위	-	7위	54.5점		
					-	10위	-	8위	51.4점		
	의료기술 6급	2014 하반기	-	-	-	1위	-	2위	63.0점		
					-	2위	-	3위	56.0점		
					-	3위	-	4위	49.0점		
					-	4위	-	1위	70.0점		
	녹지 7급			-	D	1위	-	2위	63.0점		
					-	2위	-	1위	70.0점		
	세무 6급	2015 상반기	-	△과	-	3위	-	7위	49.0점		
					-	4위	-	6위	52.5점		
	-			-	3위	-	77위	41.2점			
				-	4위	-	72위	43.2점			
	행정 6급			△읍	-	2위	-	65위	46.0점		
					-	3위	-	64위	46.4점		
	세무 7급			△과	-	5위	-	6위	57.6점		
					-	6위	-	5위	60.7점		
	사회복지 7급			-	-	5위	-	11위	42.1점		
					-	6위	-	8위	51.4점		
소계					29명						
총계					77명						

자료: 부산광역시 남구 등 4개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첨]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명세

기 관	소 속 (현 소속)	성명	근무기간	부당 업무처리 내역
부산 남구	●과 (-과)	AQ	2012. 1.1. ~ 2013.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국 ■과 지 방세무주사보AR이 ●국 ■과 AS보다 후순위인데도 근무성적 평정 최종서열(안)을 작성하면서 순위를 변경하는 등 4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부당변경
부산 부산진구	-과 (-)	AT	2014. 1.1. ~ 2016.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상반기와 2015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 면서 -국 -과 -가 같은 부서 -보다 후순위인데도 근무성적평정 최종서열(안)을 작성하면서 순위를 변경하는 등 4명의 근무성 적평정 순위를 부당변경
	-과	AU	2017. 1.1. ~ 2017. 12. 8.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과 -이 같 은 부서 -보다 후순위인데도 근무성적평정 최종서열(안)을 작 성하면서 순위를 부당변경
사천시	♥ (공보감사 담당관실)	Z	2014. 7.31. ~ 2016. 6.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 -이 민원봉사과-보다 후순위인데도 근무성적 평정 최종서열(안)을 작성하면서 순위를 변경하는 등 27명의 근무성적평정순위를 부당변경
고성군	◇과 (-)	AV	2011. 1.7. ~ 2015. 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 -이 같은 부서 -보다 후순위인데도 근무성적평 정 최종서열(안)을 작성하면서 순위를 변경하는 등 19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부당변경
	◇과	AW	2015. 7.6. ~ 2017. 12. 8.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상반기에 근무성적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과-이 같은 부서 -보다 후순위인데도 근무성적평정 최종서열(안)을 작성하면서 순위를 변경하는 등 10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부당변경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7급 근속승진 임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천시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1. 업무 개요

사천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 5. 6. 대통령령 제2424호) 제33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2013. 8. 27. 8급 공무원 3명을 7급 근속승진 임용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8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하기 위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자)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8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재직³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 기간과 징계처분 등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견책의 경우 6개월)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천시는 7급 근속승진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징계처분과 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근속승진 소요연수에서 제외한 후 8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했다.

39) 2017. 3. 8. 대통령령 제27929호 개정으로 8급에서 7급으로의 근속승진기간이 7년으로 단축됨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위 관서 □과 ★담당 AE는 2013년 8월경 8급 AX 등 3명에 대한 7급 근속승진 임용 적격 여부를 검토하면서 AX의 경우 2006. 2. 27. 8급에 임용된 후 2011. 8. 12.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견책)을 받은 바 있어 승진제한기간 6개월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되어 근속승진 소요연수 7년 6개월에 미달한 7년이기 때문에 근속승진 임용대상이 아닌데도 인사시스템상 징계기록이 반영되어 자동적으로 근속승진 임용 대상자가 추출된다고 임의로 판단한 후 징계·형벌 등 인사기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인 6개월을 제외하지 않고 8급 재직기간을 7년 6개월로 산정한 후 인사위원회에 근속승진 임용(안)을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7급 근속승진자로 심의·의결하였다.

그 결과 AX는 7급 근속승진 소요연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근속승진자로 임용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근속승진 소요연수에 미달하는 대상자를 근속승진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① 앞으로 근속승진 소요연수에 미달하는 대상자를 근속승진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관련자 ■과 AE(현 ◆ 주민센터)에게는 주의를 촉구하
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허가기간이 만료된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천시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1. 업무 개요

사천시는 「산지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한 후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는 등의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를 복구하도록 되어 있고,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위해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에 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41조, 제44조,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복구의무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대행자를 지정하여 산지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게 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복구의무자에게 산지전용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복구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복구의무자가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행자를 지정하여 산지를 복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는 관내에 산지전용허가(허가기간: 2014. 2. 25.~2016. 1. 30.)를 받은 AY가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인 2016. 1. 20.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산지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대행자를 지정하여 산지를 복구하지도 않는 등 [별표]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지 관련 복구설계서 미제출 명세”와 같이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년 4개월이 지난 2017년 11월 현재까지 산지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위 관서는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17,432㎡ 산지가 건축물 대지 등으로 형질변경된 후 재해예방·경관유지에 필요한 복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 ①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24건(면적: 17,432㎡)의 산지전용기간 만료지 복구의무자에게 산지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 ② 앞으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지 미복구 명세

(단위: m², 천 원)

일련 번호	허가일자	수허가자	허가지			허가내역			복구비	
			읍면동	리	지번	면적	용도	허가만료일	금액	예치일자
1	2014. 2. 26.	AY	-	-	-	1,665	종교집회장(사찰)	2016. 1. 30.	44,000	2014. 3. 5
2	2014. 4. 14.	-	-	-	-	1,626	단독주택	2016.12.30.	20,421	2016. 5. 2
3	2014. 6. 30.	-	-	-	-	976	사찰 및 진입도로	2015. 6. 30.	11,653	2014.11.5
4	2015. 5. 14.	-	-	-	-	434	단독주택	2017. 4. 30.	17,710	2016.1.8
5	2015. 12. 11.	-	-	-	-	132	공동주택 아파트	2016. 12. 30.	예치면제	
6	2016. 5. 4.	-	-	-	-	1,121	단독주택 및 진입로	2016. 8. 30.	116,039	2016.5.18
7	2016. 2. 2.	-	-	-	-	532	단독주택	2017. 6. 30.	44,000	2016.8.29
8	2016. 2. 2.	-	-	-	-	463	단독주택	2017. 6. 30.	28,600	2016.8.29
9	2016. 2. 2.	-	-	-	-	606	단독주택	2017. 6. 30.	48,400	2016.8.31
10	2016. 2. 2.	-	-	-	-	1,255	단독주택	2017. 6. 30.	79,200	2016.9.8
11	2016. 6. 27.	-	-	-	-	1,377	단독주택(1블록)	2017. 6. 30.	76,893	2017.2.7
12	2016. 6. 27.	-	-	-	-	1,865	단독주택(2블록)	2017. 6. 30.	76,893	2017.2.27
13	2016. 7. 4.	-	-	-	-	160	단독주택	2017. 7. 30.	예치면제	
14	2016. 7. 4.	-	-	-	-	146	단독주택	2017. 7. 30.	예치면제	
15	2016. 7. 18.	-	-	-	-	640	단독주택	2017. 7. 30.	8,601	2016.8.5
16	2016. 8. 22.	-	-	-	-	726	단독주택	2017. 9. 30.	9,757	2016.8.25
17	2016. 8. 22.	-	-	-	-	495	단독주택	2017. 9. 30.	6,652	2016.8.25
18	2016. 8. 22.	-	-	-	-	446	단독주택	2017. 9. 30.	5,994	2016.8.25
19	2016. 10. 31.	-	-	-	-	690	단독주택	2017. 10. 30.	9,273	2016.11.10
20	2017. 5. 2.	-	-	-	-	375	종중묘지	2017.7.30.	5,040	2016.8.12
21	2017. 2. 14.	-	-	-	-	61	단독주택	2017. 5. 30.	43,200	2017.2.1
22	2017. 2. 14.	-	-	-	-	313	단독주택	2017. 5. 30.	11,130	2017.2.1
23	2017. 2. 13.	-	-	-	-	473	단독주택	2017. 5. 30.	41,200	2017.1.3
24	2017. 7. 15.	-	-	-	-	855	단독주택	2017. 5. 30.	80,920	2016.7.12
	합 계	24건				17,432			785,576	

자료: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법령상 하자 없는 건축허가신청 반려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남구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남구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남구는 2015. 4. 1. ◇◇주식회사(대표이사 AZ, 이하 “◇◇”라 한다)로부터 관내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494.16㎡)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받고 같은 해 6. 30.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결과, 건축허가 대상인데도 같은 해 7. 20. 구청장 지시사항을 사유로 하여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법원⁴⁰⁾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40)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등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남구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 건축허가신청의 경우 2015. 6. 30.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해당 건축허가신청 부지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용호Sea-side 관광지 조성사업’⁴¹⁾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위 관서가 시행 예정인 ‘백운포 마리나항만 조성사업’⁴²⁾에 따른 예정구역으로만 지정된 상태로 위 신청부지 양옆에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4층 건물이 각각 들어서 있는 등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할 사유가 없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구청장 지시사항⁴³⁾을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는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2015. 11. 24. 기각 재결) 및 1년 6개월여 간의 행정소송⁴⁴⁾을 거쳐 2017. 6. 29.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후에야 2017. 10. 30. ◇◇가 다시 건축허가신청(건축연면적 478.34㎡,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하자 관련부서

41) 남구에 총 4,381억 원을 투자하여 호텔, 콘도 등을 짓는 민간투자사업임

42) 남구에 247억 원을 투자하여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12. 11. 5. 주식회사 ♡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2013. 10. 8. 지정 철회되었으며, 2016. 3. 2. ♡공사의 백운포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사업성 검토 결과 마리나항만 개발 부적합 지역으로 검토됨

43) 백운포 일원은 ‘용호Sea-side 관광지 조성사업’과 ‘백운포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등이 예정된 지역이므로, 관련사업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발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백운포 일원의 개발행위(현상변경, 건축물 신축 등)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내용임

44) 부산광역시 남구는 1심·2심·3심 모두 패소하였음

협의를 거쳐 2017. 11. 29. 건축허가를 하였다.

그 결과 정당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주었음은 물론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지출⁴⁵⁾과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부산광역시 남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앞으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정당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5)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변호사수임비용 등으로 7,391,100원을 지출하였으며, 추후 ◇◇측에서 소송비용을 확정청구할 예정임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협의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업무 개요

의령군은 2014. 2. 28. BA가 관내(연면적: 2,340㎡,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축사를 건립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한 데 대하여 같은 해 3. 14. 건축허가에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군계획위원회 위원 5명 중 3명이 가결, 1명이 조건부 가결하는 등 조건부 가결되었는데도 이를 부결로 처리한 후 같은 해 4. 28. BA에게 개발행위허가 불협의를 사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통보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1항 및 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14. 2. 28. BA는 관내에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 의령군에 개발행위 허가 등을 일괄처리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지역은 축사 등 동물 및 식물관리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서 2013년 3월경에도 인근에 소재한 축사의 증축 허가⁴⁶⁾가 이루어진 적이 있으며, 2014. 3. 18.부터 같은 해 3. 19.까지 이루어진 군계획위원회의 서면 심의 결과 건축허가에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군계획위원 5명 중 3명이 가결, 1명이 조건부 가결한다는 의결서를 제출하였다.⁴⁷⁾

따라서 위 관서(■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⁴⁸⁾ 군계획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다르게 심의를 부결처리하고 개발행위를 불허가(개발행위허가 불협의)해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 ■과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군수가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BA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라고 했다는 사유로

46) 2013. 3. 6.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소 사육시설(2,542.61㎡) 및 퇴비시설(312㎡/일) 등을 증축하는 내용으로 개발 행위허가를 포함하여 건축 허가하였음

47) 의령군의원 BB, ⚙️건축사무소장 BC, 의령군 J과장 BD는 가결, ☆☆대학교 교수 BE는 악취발생 저감 조건으로 가결, 의령군 ■과장 BF는 주민반발이 심하니 주민동의를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부결함

4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관계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불허가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음

심의 결과를 부결로 처리하였고, 2014. 4. 28. 개발행위허가 불협의를 사유로 BA에게 건축 불허가 처분을 통보하였다.

이후 2014. 5. 22. BA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도록 재결(2014. 7. 4.)되자 같은 해 7. 16.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계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로 건축허가에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를 불협의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시설 조성공사 관급자재 검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안군

조 치 기 관 함안군

내 용

1. 업무 개요

함안군은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경관 정비 및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관내에 휴게 시설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문화재 종합안내판을 제작·설치하기 위해 2017. 5. 22. ●●주식회사(대표이사 BG, 이하 “●●”라 한다)와 “함안말이산고분군 휴게시설 조성공사 관급자재” 계약(계약금액: 16,956천 원)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18. 검사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과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감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감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위 관서 ■실 BH는 사업예산의 집행률 저조 등⁴⁹⁾을 이유로 종합안내판을 납품하기 이전에 검사를⁵⁰⁾요청하도록 ●●에 요구하였고 2017. 9. 18. ●●가 안내판을 납품하지 않은 채 검사를 요청하자 같은 날 납품된 것으로 감사조서에 서명하고 위 휴게시설 조성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준공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유산담당 BI와 실장 BJ의 결재를 받아 같은 해 9. 18. 위 관서 ●과에 통보함으로써 9. 25. 관급자재 납품대가 16,956천 원을 ●●에 지급하게 하였다.

또한 ■실 BI와 실장 BJ는 위 휴게시설 조성공사의 종합안내판이 실제로 납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H가 보고한 감사조서를 그대로 결재하였고 BH가 ●●에 관급자재 납품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7. 10. 23.~11. 3.) 중 종합안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7. 11. 3. 현재까지도 종합안내판에 기재될 문구 등 시안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는 대금 지급이 완료된 지 약 2개월 후인 같은 해 11. 15.에서야 종합안내판을 제작·설치하였다.

49) ■실장 등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2017. 6. 1. 국정과제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 관련 자료 준비 등으로 경황이 없었고, 종합안내판의 안내문 내용을 자문해 줄 ◆◆과학원 교수의 해외출장 등과 맞물려 완공이 지연되었다고 해명함

50) 2017. 9. 18. ●●는 문안 감수 및 디자인 수정 등으로 안내판 제작이 지연되었으나 같은 해 11. 30.까지 종합안내판을 제작·납품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위 관서에 제출함

그 결과 위 관서는 말미산고분군 휴게시설 조성공사의 관급자재인 종합 안내판의 납품·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검사하고 관급자재 비용 16,956천 원을 미리 지급하는 등 관급자재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안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자재 검사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 ① 앞으로 관급자재가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검사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당항포관광지 행사대행 위·수탁 계약 체결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조 치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내 용

1. 업무 개요

경상남도 고성군은 2016년 10월경 주식회사■■■(대표이사 BK,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관내 당항포관광지⁵¹⁾ 내 주차장 부지(면적 33,407㎡)에 눈썰매장⁵²⁾, 실내놀이존(전동기차, 에어바운스 등), 야외놀이존 등을 설치·운영하는 ‘고성 팡팡 눈썰매 축제 행사’⁵³⁾ 제안을 받고 나서, 같은 해 10. 28. 위 제안에 따라 ‘고성 팡팡 눈썰매 행사계획’⁵⁴⁾을 수립한 후, 같은 해 11. 23. ■■■과 ‘당항포관광지 비수기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대행 위·수탁 계약(계약금액: 3천만 원, 계약기간 2016. 11. 28~2017. 3. 1)’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관서는 2015. 4. 3.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 주차장 부지를 공공편익시설지구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⁵⁵⁾하였다.

51) 1984. 6. 2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9. 22.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됨

52) 눈썰매장 상단부는 컨테이너 3개를 쌓아올리고, 슬로프는 쇠파이프 등을 엮어 경사면을 조성함

53) 행사는 ■■■ 주최, 주식회사 ▲▲ 주관으로 함

54) ■■■이 제안한 계획을 검토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음

55) 고성군 고시 제2015-47호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관련 별표 19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편익시설지구에는 도로, 주차장 등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 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눈썰매장 등의 체육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동기차 등의 유원시설은 운동·오락시설지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관서가 ■■■과 체결한 ‘당항포관광지 비수기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대행 위·수탁 계약서’ 제8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자는 위탁자(고성군)의 승인을 얻어 운영에 필요한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으나,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계약서 제16조에 따르면 수탁자가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계약해지 조치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으로부터 당항포관광지 내 공공편익시설지구인 주차장에 설치가 불가능한 눈썰매장, 전동기차 등을 설치·운영하는 행사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수락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위 관서는 다중이용시설인 눈썰매장에서 추락, 붕괴 등의 위험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수탁자가 계약서에 따라 안전한 행사운영 등을 위해 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관리·감독하며, 수탁자가 행사 운영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할 때는 수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을 한 뒤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위 관서 ■사업소 BQ는 ■■■이 2016년 10월 당항포관광지 내 공공편의시설지구인 주차장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인 눈썰매장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인 전동기차 등을 설치·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성 팡팡 눈썰매 축제행사’를 제안한 데 대해 이를 검토하면서 이를 걱정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성 팡팡 눈썰매 행사계획(■■■ 제안서 검토)’을 기안한 후 BM, ■사업소장 BN에게 결재를 올렸고 BM와 BN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걱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검토하여 결재한 후 같은 해 10. 28.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관서 ■사업소 BO는 ‘당항포관광지 비수기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대행 위·수탁 계약(안)’을 작성하여 BP, ■사업소장 BN에게 결재를 올렸고 BP와 BN은 그대로 결재한 후 2016. 11. 22. 군수의 결재를 받아 해 11. 23. ■■■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BO은 ■■■이 2016년 10월경 행사 주관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BL, 이하 “▲▲”이라 한다)이 한다는 행사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 2. ▲▲이 □과에 행사장 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⁵⁶⁾를 하는 등 실제로는 ■■■이 팡팡 눈썰매장

56) ■사업소는 □과에 ▲▲의 행사장 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으로부터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해 협의가 불가하다”고 회신함

행사 운영을 ▲▲에 위탁하면서도 행사의 일부를 전대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위 관서의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팡팡 눈썰매장 행사 운영을 하는 ▲▲이 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지 관리·감독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 결과 [사진]과 같이 2017. 1. 31. 7세 아동이 컨테이너를 쌓아올려 만든 눈썰매장 시설 상단부에서 난간에 기대다가 7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오른쪽 다리 고관절, 목부분 및 엉덩이뼈 골절)가 발생하였고 쇠파이프로 만든 눈썰매장 경사면이 일부 붕괴되어 같은 해 2. 6. 눈썰매장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

[사진] 눈썰매장 사고 발생 현황



자료: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항포관광지를 관리·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 ① 앞으로 당항포관광지 내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가 불가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사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수락하여 행사 대행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행사안전관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바다 케이블카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천시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1. 업무 개요

사천시는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 6. 26. 환경부로부터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관내 동서동 일원의 초양~각산 구간에 케이블카(삭도 거리: 2.43km)를 설치하는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총사업비: 598억 원, 사업기간: 2015. 12. 14.~2018. 1. 21.)을 추진하면서 2013. 5. 24. 주식회사 ▶▶(대표이사 BR) 외 2개 업체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노선변경 등으로 2014. 11. 7., 2017. 1. 3. 두 차례 계약을 변경, 최종 계약금액: 1,609,398,000원)을 체결하고, 2016. 5. 20. ▼▼주식회사(대표이사 BS, 이하 “▼▼”라 한다)와 ‘케이블카 설비 외자구매계약’(계약금액: 260억여 원)을 체결하는 등 위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2012. 7. 5. 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호)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종 공사의 경우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사천시는 케이블카 설치사업 입찰방법 선정을 위한 집행기본계획서를 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기 전인 2013. 1. 8. 구 국토해양부에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사전협의를 요청하였고, 2013. 2. 8. 구 국토해양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제입찰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라는 등의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케이블카 설비는 프랑스의 ◀◀, 오스트리아의 ◆◆ 등 2개사가 전세계 케이블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국내 케이블카 제작업체는 없는 등 해외 제조사의 기술 의존도가 높은 시설로서 케이블카 제작업체가 아니면 실시설계를 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천시가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때는 케이블카 설비 관련 실시설계 중 제작업체가 아니면 실시설계를 할 수 없는 공종은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사천시는 2013. 5. 24. 주식회사 ▶▶ 외 2개 업체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케이블카 설비 관련 실시설계 중 제작업체가 아니면 실시설계를 할 수 없는 공종을 제외하지 않고 용역 내용에 모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관서는 2015. 5. 15. 주식회사 ▶▶ 외 2개 업체로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의 최종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케이블카 시공에 실제 적용을 할 수 없어 준공⁵⁷⁾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 5. 20. 케이블카 설비 제작업체로 ▼▼⁵⁸⁾가 선정되자 ▼▼로 하여금 케이블카 설비 관련 실시설계를 하도록 계약하여 ▼▼가 케이블카 설비 관련 실시설계를 다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7. 10. 23.~12. 8.) 중 주식회사 ▶▶ 외 2개 업체와 ▼▼가 수행한 실시설계를 비교·검토한 결과 [별표] “케이블카 실시설계 중 활용불가 공종 내역”과 같이 기계설비 지지구조, 제어 및 신호설비, 엔지니어링(설계, 감독, 시험가동) 등 3개 공종은 실제 케이블카 설치 공사에 활용할 수 없어 그에 해당하는 설계비 최소 59백만 원에서 최대 103백만 원⁵⁹⁾이 불필요하게 집행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실제 케이블카 공사에 사용되지 않는 설계를 불필요하게 용역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케이블카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제작업체가 아니면 실시설계를 할 수 없는 공종을 설계용역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설계를 활용하지

57) 2015. 5. 20.~2017. 1. 3.(1년 7개월) 및 2017. 2. 24.부터 2017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9개월)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임

58) 프랑스 ◀◀의 국내 협력업체임

59) 케이블카 설비 부문 실시설계용역비(343,332,000원)와 활용불가 설계 비중 최소 17.2% ~ 최대 30%를 토대로 산출

못하게 되어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케이블카 실시설계 중 활용불가 공종 내역

공종	세부 공종	금액 비중	설계업무비중	비고
1. 삭도설비	1) 정류장(상,중간,하부) 기계설비	18.7	25.0	
	2) 기계설비 지지구조	3.7	5.0	활용불가
	3) 지삭 및 고정 폴리	7.5	2.5	
	4) 예삭 및 긴장장치	7.5	2.5	
	5) 구동(비상구동 포함) 설비	11.2	7.5	
	6) 상용 및 비상제동 설비	1.5	2.0	
	7) 제어 및 신호설비	6.0	10.0	활용불가
	8) 가감속설비	2.2	2.5	
	9) 차량보관소 설비	5.2	10.0	
	10) 지주상단설비	3.8	7.0	
	11) 엔지니어링(설계,감독,시험가동)	7.5	15.0	활용불가
	소계	74.8	89	
2. 차량		15.2	5.0	
3. 하부정류장 커버		0.9	0.5	
4. 구조용 차량 및 설비		4.7	3.0	
5. 지삭(데이터케이블)		1.2	1.0	
6. 솔라셀 및 배터리		0.7	0.5	
7. 운송비 등		2.5	1.0	
합계		100	100	
(활용불가 설계 비중)		(17.2%)	(30.0%)	

주: 설계서(내역서 및 견적서)상 공종별 항목을 분기하였으며, 다만 1. 삭도설비 항목은 견적에서는 분리되지 않았으나, 경험치를 기초로 분리하고, 견적서상의 금액 비중과 실제 설계업무 비중을 토대로 활용불가 설계 비중의 최소 및 최대치를 산정하였음. 활용불가 항목은 2) 기계설비 지지구조(3.7~5.0%), 7) 제어 및 신호설비(6.0~10%)와 11) 엔지니어링(7.5~15.0%) 항목임. 따라서 국내 설계에서 활용할 수 없는 항목의 합계는 최소 17.2% ~ 최대 30%로 추정됨.

자료: 주식회사 ▶▶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탑 미철거
 소 관 기 관 ① 경상남도 고성군 ② 함안군 ③ 의령군
 조 치 기 관 ① 경상남도 고성군 ② 함안군 ③ 의령군

내 용

1. 업무 개요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군 그리고 의령군 등 3개 기관은 대외 홍보를 위해 주요 도로와 인접한 위치에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탑(지주이용 간판)을 [표]와 같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노후된 광고탑의 간판을 교체하는 등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표]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탑 설치 명세

(단위: m, 백만 원)

기관명	소재지	도로와 이격거리	설치비	설치일	규격 (가로x세로x높이)	광고 내용	관리부서
고성군	▣	0 (터널 상부)	-	2000년 (날짜 모름)	20×7×9	항공산업 및 조선평구홍보	▲실
	▩	40	287	2006. 2. 21.	20×10× 24	특산품 및 관광 홍보	
	▲	8	192	2007. 2. 25.	7.2×11×11	공룡나라 및 참다래 홍보	☎과
함안군	○	34	237	2004. 12. 24.	15×12×33	함안수박 및 기업유치홍보	문화체육관광실
	●	6	178	2006. 4. 13.	16×8×25	농산물 등 홍보	▶과
의령군	◌	3.5	300	2006. 8. 20.	20×10×33.5	호국의병등홍보	☒과

주: 1. 고성군 ▣에 있는 광고탑은 관련 자료가 없어 설치비 및 설치일자를 모름

2. 함안군은 2004. 10. 20. 광고주인 ♠♠주식회사 및 ♣♣ 함안군지부 비용으로 위 광고탑을 설치 후 기부채납받아 무상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2005. 2. 18.부터 4차례에 걸쳐 무상사용허가

자료: 고성군 등 3개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법령 (판단 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에는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지역 외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등 주요 도로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은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구 옥외광고물법(2007. 12. 21. 법률 제8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은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고속도로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2007. 12. 21. 이후는 공공목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같은 법 제4조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되어 이전처럼 주요 도로의 500m 이내에는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영 시행(시행일 2008. 7. 9.)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은 이 영 시행일부터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지주이용 간판인 경우 허가 또는 신고 기간은 3년 이내) 만료 시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 등 3개 기관은 주요 도로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탑을 개정된 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8. 7. 9.에서 3년의 허가기간이 끝나는 2011. 7. 9.부터는 재허가할 수 없게 되었고 관련 법령에 설치할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철거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고성군의 경우

1) ■ 및 ▲ 소재 옥외 광고탑 미철거

위 관서 구 ▶과⁶⁰⁾는 2011. 3. 4. 및 같은 해 3. 15. 구 ◀과⁶¹⁾로부터 공공목적 광고물 현황 파악 문서⁶²⁾를 각각 접수하였고 같은 해 7. 7. 공공목적 광고물 일제 정비 시행 알림 문서를 접수하였다.

그런데 구 ▶과 광고물 업무 담당자 BT는 위 두 차례의 문서를 통보받았으나 ◀과에서 설치한 위 2개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탑은 「건축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물로 인식하여 철거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는 같은 과 담당 BU 및 과장 BV에게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은 채 ◀과에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 ▶과 광고물 업무 담당자 BW는 2013. 11. 6. 이후 ◀과로부터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도록 유선상으로 통보받고 관내 소재 3개소⁶³⁾의 광고탑을 조사하여 회신하면서 위 3개 광고탑이 철거대상이라

60) ▶과는 이후 ▲실로 명칭이 변경됨

61) ◀과는 ▽과를 거쳐 ▼과로 명칭이 변경됨

62) 행정안전부가 2011. 3. 2. 각 시·도에 공공목적의 광고물 현황을 파악하도록 문서를 시행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다시 관하 시·군으로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다시 고성군 ◀과는 같은 해 3. 4. 이를 전 부서 및 읍·면 등에 통보함

63) 고성군 ■, ▲, ▲ 소재 3개소의 광고탑

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내버려 두고 있다가 2014. 10. 13. 인사 이동되면서 후임자에게 위 내용을 인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구 ▲과)은 광고탑이 철거대상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7. 11. 24.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위 사실을 확인한 후 공공목적의 광고탑 2개소⁶⁴⁾에 대하여 2018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는 2011. 7. 9. 이후 철거되어야 할 위 광고탑 2개소에 대하여 [별표]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탑 보수공사 등 명세”와 같이 오히려 광고탑 보수공사를 실시⁶⁵⁾하는 등 2011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2억 2,700만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6년 5개월이 지난 2017. 12. 8. 현재까지 위 광고탑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2) □ 소재 옥외 광고탑 미철거

위 관서 ☞과는 2011. 3. 4. 및 같은 해 3. 15. 구 ▲과로부터 공공목적 광고물 현황 파악 문서를 접수하고 같은 해 3. 16. [표]와 같이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탑 현황을 ▲과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과는 2011. 7. 4. 구 ▲과로부터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 계획 수립 문서를 통보받은 후 위 광고탑이 철거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군수(BW)가 2012년에 개최되는 경남 고성 공룡 세계엑스포 행사 시 고성 농산물 홍보를 위

64) ▲ 소재 광고탑은 2014년 12월경(날짜 모름) 철거되어 현재 2개소의 광고탑만 남아 있음

65) 고성 공룡 세계엑스포 행사 등에 따른 홍보를 위해 화면 교체공사를 하고 야간에 광고판이 점등되지 않는다는 등의 민원 제기로 램프 교체 등의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음

해 행사 종료 후 철거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위 광고탑을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담당자 등은 후임자들에게 광고탑이 철거대상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계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과는 2013. 5. 29. 구 ▲과로부터 다시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 실적 제출 문서를 통보받았으나 담당자 등은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 광고탑이 철거대상인지를 알지 못한 채 구 ▲과로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로도 위 광고탑 철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위 관서는 위 광고탑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광고탑 보수공사 등을 실시⁶⁶⁾함으로써 [별표]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탑 보수공사등 명세”와 같이 1,500만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3항 가. 1)”의 내용과 같은 결과⁶⁷⁾를 가져왔다.

나. 함안군의 경우

1) ㉡ 소재 옥외 광고탑 미철거

함안군 구 ㉢과⁶⁸⁾는 2011. 7. 5. ㉣과⁶⁹⁾로부터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철거계획을 제출하라는 문서를 접수하였다.

그런데 구 ㉢과는 자체 논의과정을 거쳐 위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탑의 광

66) 광고탑 도색이 벗겨져 있다는 등의 민원 제기로 보수공사를 실시함

67) 위 관서 ㉠과는 위 광고탑을 감사기간 중인 2017. 12. 8. 철거함

68) ㉢과는 ㉤과로 변경 후 현재는 ■실로 명칭이 변경됨

69) 위 관서 ㉣과는 2011. 3. 3. 경상남도로부터 공공목적 광고물 현황을 파악하라는 문서를 접수한 후 현장 확인을 통해 남해고속도로 주변인 관내 ㉡와 ㉡에 각 1개씩의 공공목적 광고물을 파악하였고 같은 해 7. 1. 경상남도로부터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철거계획을 제출하라는 문서를 접수한 다음 같은 해 7. 5. 광고탑을 설치한 부서(㉢과와 ㉤과)에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함

고 효과를 대체할 수단이 없고 철거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등의 사유로 ㉸과에 철거가 어렵다고 유선상으로 통보하였다.

이후 구 ㉸과는 2013. 9. 17. ㉸과가 위 광고탑에 대해 예산 확보 후 철거 예정이라는 내용의 철거계획을 작성하여 경상남도에 회신할 때 협조(㉸과장이 서명)하였으나 이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철거에 대한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함안군은 위 광고탑에 대해 아무런 조치⁷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광고주로 하여금 광고탑 보수공사 등을 실시⁷¹⁾하도록 하는 등 “3항 가. 1)”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2) ● 소재 옥외 광고탑 미철거

함안군 구 ㉸과⁷²⁾는 2011. 7. 5. ㉸과로부터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계획을 제출하라는 문서를 접수하였다.

그런데 구 ㉸과는 광고탑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농산물 홍보를 위해 철거보다는 존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는 위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탑에 대한 철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과에 문서를 회신하지도 아니하였다.

이후 구 ㉸과는 2013. 9. 17. ㉸과가 위 광고탑에 대해 예산 확보 후 철

70) 위 관서 ㉸과는 2017. 2. 16. ㉸과로부터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통보받고 나서야 같은 해 2. 24. 위 광고탑에 대하여 2018년도 본예산 확보 후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과에 회신함

71) 2015년 5월 초(날짜 모름) 위 광고탑이 노후화되고 광고판이 남해고속도로 방음벽에 가려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군수(BX)의 지적에 따라 같은 해 6. 1. 광고주인 ♠♠주식회사 및 ♣♣함안군지부에 광고탑 증축 및 간판교체 협조 문서를 발송하여 광고주가 1억 1천만 원을 들여 광고탑을 5m 증축(높이 33m→38m)하게 하고 광고 간판도 교체하였으며 2011년 철거를 통보받은 이후 함안군이 위 광고탑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예산은 없음

72) ㉸과는 ㉸과로 변경된 후 현재 ㉸과로 명칭이 변경됨

거 예정이라는 내용의 철거계획을 작성하여 경상남도에 회신할 때 협조(☞과장이 서명)하였으나 이때에도 광고탑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였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고는 별도의 철거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고 철거에 대한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함안군은 위 광고탑에 대해 아무런 조치⁷³⁾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광고탑 보수공사 등을 실시⁷⁴⁾함으로써 [별표]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탑 보수공사 등 명세”와 같이 4,600만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3항 가. 1)”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다. 의령군의 경우

1) ◐ 소재 옥외 광고탑 미철거

의령군 구 ◑과⁷⁵⁾는 2011. 7. 1.⁷⁶⁾ 이후 구 ◒과⁷⁷⁾로부터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탑 등 3개소⁷⁸⁾의 광고탑에 대한 철거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받고 2011. 8. 11.과 같은 해 8. 24. 각각 관내에 있는 광고탑 2개소의 철거공사를 시행하였으나 ◐ 에 있는 광고탑은 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유로 철거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광고탑 화면교체 공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후 구 ◑과는 2013. 9. 11. ◒과로부터 위 광고탑을 철거하라는 독촉을

73) 위 관서 ◑과는 2017. 2. 16. ◑과로부터 도로변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계획을 통보받고 나서야 같은 해 2. 20. 2018년도 본예산 확보 후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과에 회신함

74) 광고탑 설치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광고탑이 탈색되고 전원부분이 고장났다는 민원 등을 사유로 보수공사를 실시함

75) ◑과는 현재 ◒과로 명칭이 변경됨

76) ◒과는 2011. 5. 12. 관내 광고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3개의 광고탑을 확인한 후 같은 해 7. 1. 경상남도로부터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계획 제출 문서를 접수하여 이를 ◑과에 우선으로 통보함

77) ◒과는 ◒과를 거쳐 다시 ◒과로 명칭이 변경됨

78) ◐ 등 3개소의 광고탑임

받고 광고탑 철거 예산을 편성하는 계획을 수립하던 중 군수(BY)가 당장 철거하지 말고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라고 지시하여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광고탑의 철거를 미룬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철거에 대한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의령군은 위 광고탑 철거를 미루고⁷⁹⁾ 오히려 광고탑 보수공사 등을 실시⁸⁰⁾함으로써 [별표]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탑 보수공사 등 명세”와 같이 6,800만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3항 가. 1)”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 함안군 그리고 의령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2018년도 예산에 철거비용을 편성하여 철거가 완료되도록 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연찬을 실시하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주요 도로로부터 500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탑을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79) ㉠과는 2017. 2. 16. ㉡과로부터 도로변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계획을 제출할 것을 우선상으로 통보받았으나 당장 철거할 예산이 없으므로 추후 예산 확보 및 철거계획을 세우겠다고 회신하였고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후인 같은 해 10. 31. 위 광고탑에 대하여 2018년 예산을 확보한 후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BZ)의 결재를 받음

80) 위 광고탑이 강풍에 간판이 훼손되고 내부가 노후화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보수공사 등을 실시함

② 앞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탑을 철거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옥외 광고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함안군수는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주요 도로로부터 500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탑을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탑을 철거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옥외 광고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의령군수는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주요 도로로부터 500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탑을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탑을 철거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옥외

광고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탑 보수공사 등 명세

(단위: 원)

기관명	광고탑 소재지	계약일자 (사용기간)	보수공사등 내역	계약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고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2011. 6. 15.	야립광고판 화면 교체공사	-	38,600,000	
		2012. 8. 14.	야립광고판 화면 교체 및 제작 설치	-	30,819,000	
		2015. 5. 22.	야립광고판 화면 교체 및 제작 설치	-	41,582,000	
		2016. 3. 7.	야립광고판 형광램프 및 안정기 교체 공사	-	11,700,000	
		2016. 4. 25.	야립광고판 광고물 제작 및 화면 교체	-	42,000,000	
		2011. 1.~ 2017. 10.	전기요금	-	59,863,880	
		2011. 1.~ 2017. 10.	토지사용료(▲ 산 20-1)	-	3,069,000	
	소계					227,633,8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011. 6. 13.	홍보탑 조명공사	-	2,790,000	
		2015. 3. 16.	홍보탑 도색 등 수선공사	-	13,200,000	
		소계				15,990,000
	함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015. 11. 6.	홍보탑 시트 교체공사	-	20,148,000
			2015. 12. 2.	홍보탑 조명등 교체공사	-	6,710,000
2011. 1.~ 2017. 10.			전기요금	-	19,154,090	
소계				46,012,090		
의령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012. 4. 5.	토요애 야립 광고탑 화면 보수공사	-	5,456,000	
		2013. 1. 14.	의령군 홍보용 야립 광고탑 화면 교체 공사	-	17,807,000	
		2013. 3. 11.	의령군 홍보 야립 광고탑 안정기 및 형광등 교체공사	-	8,000,000	
		2013. 3. 25.	의령군 홍보 야립 광고탑 와이어 및 단버클 교체공사	-	3,368,000	
		2011. 1.~ 2017. 10.	전기요금	-	33,473,550	
		소계				68,104,550

자료: 고성군 등 3개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천시 등 [별표 1] 기재 4개 기관

조 치 기 관 사천시 등 [별표 1] 기재 4개 기관

내 용

1. 업무 개요

사천시 등 4개 기관은 「건축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건축물(이하 “위반 건축물”이라 한다)을 단속한 후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80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⁸¹⁾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사천시의 경우

위 관서는 2014. 9. 18. 건축주 CA가 관내에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음식점 용도로 무허가 신축(면적: 207.86㎡)한 사실을 적발하고 CA에 대하여 2014. 9. 22.과 2014. 11. 25.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11. 25. 이행강제금 7,893천 원을 최초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반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CA에 대하여 「사천시 건축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연 1회 주기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11,774천 원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2-1] “사천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현황”과 같이 2013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 건축물 23건의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계 49,596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나. 함안군의 경우

위 관서는 2015. 4. 6. 건축주 CB가 관내에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

81)사천시·함안군은 연1회, 의령군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실제로 1년 1회 부과), 고성군은 1년 이내 2회(2014. 5. 28. 개정된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2014. 10. 13. 「고성군 건축조례」 제39조에 1년 이내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위 조례 개정 전부터 적용했던 기준에 따라 1년에 1회) 부과·징수

여 사무소 용도로 무허가 증축(면적: 118.9㎡)한 사실을 적발하고 CB에 대하여 2015. 4. 7.과 2015. 11. 30.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6. 5. 12. 이행강제금 12,002천 원을 최초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반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CB에 대하여 「함안군 건축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연 1회 주기로 이행강제금 35,473천 원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2-2] “함안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현황”과 같이 2013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 건축물 7건의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계 92,493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다. 경상남도 고성군의 경우

위 관서는 2014. 6. 30. 건축주 CC가 관내에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장 용도로 무허가 증축(면적: 1357.69㎡)한 사실을 적발하고 CC에 대하여 2014. 7. 10.과 2014. 9. 23.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4. 11. 20.과 다음 해인 2015. 12. 23. 2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 28,281천 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반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CC에 대하여 「고성군 건축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내 2회 주기로 이행강제금 46,229천 원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2-3] “고성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현황”과 같이 2013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 건축물 39건의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계 369,552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라. 의령군의 경우

위 관서는 2014. 11. 26. 건축주 CD가 관내에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독주택 용도로 무허가 신축(면적: 103㎡)한 사실을 적발하고 CD에 대하여 2014. 11. 26.과 같은 해 12. 26.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는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채 위반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CD에 대하여 「의령군 건축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34,711천 원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 등 4개 기관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이번 감사원감사를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사천시 등 [별표 1] 기재 4개 기관장은 앞으로 관내 무허가 건축물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기관별 이행강제금 미부과 현황

(단위: 건, 천 원)

시·군명	위반건축물 적발건수	이행강제금 미부과	
		건수	미부과
사천시	291	23	49,596
함안군	149	7	92,493
고성군	255	39	369,552
의령군	35	1	34,711

주: 2017년 10월 말 기준

자료: 사천시 등 4개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1]

사천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현황

(단위: m², 회, 천 원)

연번	「건축법」 위반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적발일	위반자	건축물 소재지	용도	내용	부과		미부과	
		최초 시정 명령일			면적	횟수	금액	횟수	금액
사천시 총계						53	285,276	23	49,596
1	2014. 9. 18.	CA	-	일반 음식점	무허가 신축 207.86	2	15,786	1	11,774
		2014. 9. 22.							
2	2013. 1. 18.	-	-	소매점	무허가 증축 5.6	4	44,121	1	725
		2013. 5. 15.							
3	2013. 4. 10.	-	-	창고	무허가 증축 13.5	4	5,481	1	996
		2013. 4. 15.							
4	2013. 4. 30.	-	-	소매점, 제조업소	무허가 증축 16.5	3	88,220	1	1,975
		2013. 4. 30.							
5	2013. 7. 2.	-	-	축사	무허가 증축 83.2	3	3,294	1	611
		2013. 7. 2.							

연번	「건축법」 위반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적발일	위반자	건축물 소재지	용도	내용	부과		미부과	
		최초 시정 명령일			면적	횟수	금액	횟수	금액
6	2013. 7. 3.	-	-	측사	무허가 증축	2	2,933	1	1,935
		2013. 7. 3.			203.7				
7	2013. 7. 25.	-	-	일반 음식점, 주택	건축선 위반	4	7,116	1	1,594
		2013. 7. 25.			98, 624, 4, 76				
8	2013. 10. 22.	-	-	단독 주택	무허가 증축	3	13,170	1	2,569
		2013. 10. 22.			18.3, 7.5, 33.5				
9	2013. 10. 4.	-	-	단독 주택	무허가 증축	3	17,388	1	4,019
		2013. 10. 15.			90				
10	2013. 10. 31.	-	-	단독 주택	무허가 증축	3	2,520	1	647
		2013. 11. 4.			46.4, 56.3				
11	2013. 11. 4.	-	-	돈사	무허가 증축	3	56,700	1	9,450
		2013. 11. 5.			700				
12	2014. 1. 3.	-	-	단독 주택	무허가 신축	3	1,248	1	338
		2014. 1. 6.			15				
13	2014. 6. 2.	-	-	소매점	무허가 증축	3	1,020	1	244
		2014. 6. 2.			2.35				
14	2014. 8. 5.	-	-	창고 시설	무허가 증축	3	1,036	1	189
		2014. 8. 7.			7.2				
15	2013. 3. 18.	-	-	단독 주택	무허가 증축	1	768	1	869
		2013. 3. 18.			12.24				
16	2014. 11. 18.	-	-	일반 음식점 종교 집회장	무허가 신축	2	17,738	1	6,178
		2014. 12. 26.			39.42, 36.3, 12				

연번	「건축법」 위반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적발일	위반자	건축물 소재지	용도	내용	부과		미부과	
		최초 시정 명령일			면적	횟수	금액	횟수	금액
17	2015. 2. 5.	-	-	단독 주택	무허가 증축	1	1,409	1	1,578
		2015. 3. 18.			87.7				
18	2015. 8. 31.	-	-	주택	무허가 증축	1	1,080	1	790
		2015. 9. 30.			18.98				
19	2015. 10. 2.	-	-	주택	무허가 증축	1	530	1	371
		2015. 10. 27.			15.2				
20	2015. 8. 11.	-	-	단독 주택	무허가 신축	1	2,499	1	1,687
		2015. 8. 31.			40, 25				
21	2016. 1. 18.	-	-	일반 음식점	무허가 증축	1	259	1	181
		2016. 3. 11.			12.5, 2.5, 3.9				
22	2016. 2. 23.	-	-	부설 주차장	부설 주차장 용도 변경	1	650	1	650
		2016. 4. 12.			13				
23	2016. 5. 3.	-	-	소매점	무허가 증축	1	310	1	226
		2016. 6. 10.			27				

주: 2017년 10월 말 기준

자료: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2]

함안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현황

(단위: m², 회, 천 원)

연번	「건축법」 위반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적발일	위반자	건축물 소재지	용도	내용	부과		미부과	
		최초 시정 명령일			면적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함안군 총계						8	47,490	7	92,493
1	2015. 4. 6.	CB 2015. 4. 7.	-	사무소	무허가증축 118.9	1	12,002	1	35,473
2	2014. 1. 14.	- 2014. 1. 14.	-	단독 주택	무신고신축 61.42	2	1,848	1	3,059
3	2014. 3. 26.	- 2014. 3. 26.	-	단독 주택	무신고신축 54.69	2	3,587	1	1,493
4	2014. 3. 26.	- 2014. 3. 26.	-	단독 주택	무허가신축 80	-	-	1	2,392
5	2014. 7. 11.	- 2014. 7. 11.	-	공장	무허가증축 481.85	1	10,505	1	19,806
6	2014. 7. 11.	- 2014. 7. 11.	-	공장	무허가증축 318.53	1	15,528	1	15,528
7	2015. 6. 12.	- 2015. 6. 12.	-	축사	무허가증축 989.17	1	4,020	1	14,742

주: 2017년 10월 말 기준

자료: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3]

고성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현황

(단위: m², 회, 천 원)

연번	「건축법」 위반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적발일	위반자	건축물 소재지	용도	내용	부과		미부과	
		시정 명령일			면적	횟수	금액	횟수	금액
고성군 총계						63	316,795	83	369,552
1	2014. 6. 30.	CC	-	공장	무허가증축	2	28,281	3	46,229
		2014. 7. 10.			1,357.69				
2	2013. 5. 9.	-	-	축사	무허가증축	3	314	3	433
		2013. 5. 10.			92.10				
3	2013. 7. 1.	-	-	단독 주택	무허가증축	3	1,260	2	842
		2013. 7. 2.			19.42				
4	2013. 7. 1.	-	-	단독주택, 일반 음식점	무허가증축	2	2,163	4	5,536
		2013. 10. 7.			82.49				
5	2013. 8. 7.	-	-	종교 집회장	무허가증축	2	20,413	1	10,481
		2013. 8. 29.			122.2				
6	2013. 9. 11.	-	-	단독 주택	무허가증축	3	943	3	1,285
		2013. 9. 16.			29.28				
7	2013. 9. 11.	-	-	축사	무허가신축	3	1,861	3	681
		2013. 9. 16.			194.8				
8	2014. 1. 10.	-	-	음식점	무허가증축	1	22,173	1	22,173
		2014. 1. 10.			379.59				
9	2014. 1. 14.	-	-	숙소	무허가증축	-	-	2	1,014
		2014. 1. 14.			18				
10	2014. 1. 28.	-	-	축사	무허가증축	2	8,890	1	4,501
		2014. 2. 4.			375.15				
11	2014. 3. 24.	-	-	공장	무허가증축	1	4,904	2	13,744
		2014. 4. 1.			187				

연번	「건축법」 위반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적발일	위반자	건축물 소재지	용도	내용	부과		미부과	
		시정 명령일			면적	횟수	금액	횟수	금액
12	2014. 4. 24.	-	-	측사	무허가증축	1	11,634	2	4,602
		2014. 4. 30.			1,514.55				
13	2014. 6. 30.	문수자	-	참고	무허가증축	3	8,054	2	2,652
		2014. 7. 7.			513.78				
14	2014. 6. 18.	-	-	측사	무허가증축	2	8,325	3	10,007
		2014. 7. 21.			312.29				
15	2014. 6. 30.	-	-	참고	무허가증축	3	37,005	2	28,775
		2014. 7. 29.			1,968.1				
16	2014. 6. 30.	-	-	참고	무허가증축	3	27,716	2	6,604
		2014. 8. 18.			814.26				
17	2014. 6. 25.	-	-	음식점	무허가증축	2	4,321	3	4,673
		2014. 8. 21.			27.99				
18	2014. 11. 24.	-	-	참고	무허가증축	2	1,169	3	1,866
		2014. 11. 28.			9				
19	2014. 11. 17.	-	-	단독 주택	무허가증축, 대수선	2	13,982	3	19,019
		2014. 11. 20.			234.62				
20	2015. 2. 24.	-	-	소매점	무허가증축	2	66,614	3	105,282
		2015. 2. 26.			302.42				
21	2015. 2. 24.	-	-	신발 수선	무허가신축	2	161	3	184
		2015. 3. 2.			11				
22	2015. 4. 7.	-	-	참고	무허가증축	2	87	3	73
		2015. 4. 14.			28.2				
23	2015. 4. 21.	-	-	블록	무허가증축, 대수선	2	1,087	3	1,661
		2015. 4. 28.			81.2				
24	2015. 8. 20.	-	-	음식점	무허가증축	1	5,223	3	12,511
		2015. 8. 24.			34.25				

연번	「건축법」 위반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적발일	위반자	건축물 소재지	용도	내용	부과		미부과	
		시정 명령일			면적	횟수	금액	횟수	금액
25	2015. 3. 30.	-	-	창고	무허가증축	1	7,500	3	14,332
		2015. 11. 16.			637.65				
26	2015. 3. 30.	-	-	단독 주택	무허가증축	3	2,844	2	2,207
		2015. 3. 31.			52.6				
27	2015. 12. 11.	-	-	공장	대수선위반	1	3,474	1	3,474
		2015. 12. 15.			914.4				
28	2015. 12. 31.	-	-	종교 시설	무허가신축	1	3,852	2	6,719
		2016. 1. 8.			428.98				
29	2016. 1. 4.	-	-	사무실	무허가신축	1	4,666	2	8,909
		2016. 1. 7.			116.46				
30	2016. 1. 14.	-	-	단독 주택	무허가신축	1	1,041	2	1,512
		2016. 1. 18.			80.34				
31	2016. 3. 24.	-	-	창고, 주택	무허가증축	1	1,550	2	2,926
		2016. 4. 6.			148.75				
32	2016. 4. 28.	-	-	농막	무허가신축	1	171	2	344
		2016. 4. 29.			45.48				
33	2016. 5. 25.	-	-	창고, 주택	무허가증축	1	995	1	811
		2016. 5. 31.			88.28				
34	2016. 5. 26.	-	-	화장실	무허가증축	1	498	1	409
		2016. 5. 31.			19.5				
35	2016. 5. 25.	-	-	단독 주택	무허가증축, 용도 변경	1	13,355	1	12,615
		2016. 5. 31.			247.82				
36	2016. 6. 15.	-	-	단독 주택	무허가증축	1	269	1	282
		2016. 6. 28.			8.76				
37	2016. 11. 28.	-	-	어린이집	무허가증축	-	-	1	1,685
		2016. 12. 8.			43.01				
38	2017. 3. 3.	-	-	경비실	무허가증축	-	-	1	241
		2017. 3. 8.			6.64				

연번	「건축법」 위반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적발일	위반자	건축물 소재지	용도	내용	부과		미부과	
		시정 명령일			면적	횟수	금액	횟수	금액
39	2017. 1. 3.	-	-	창고, 사무실	무허가증축	-	-	1	8,258
		2017. 2. 28.			190.03				

주: 2017년 10월 말 기준

자료: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조 치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내 용

1. 업무 개요

경상남도 고성군은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국세청, 검찰청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관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통보받아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및 제5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⁸²⁾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은 그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8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함(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 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⁸³⁾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위 관서 ○실 CE는 2014. 4. 1.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로 의심된다고 통보받은 CF에 대해 같은 해 4. 30.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문(이하 “통지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날짜 모름)되자, 같은 해 5. 12. CF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소지 조회를 의뢰⁸⁴⁾하여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하고도 통지문을 재송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2014. 10. 13. 직제개편으로 토지평가업무(담당업무)가 ○실에서 <과로 변경되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의 업무도 <과로 변

83) 부동산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 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이며(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과징금 부과제척 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음(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등)

84) 2014. 5. 12. CF의 거주지 조회를 의뢰(문서번호: ○실-18927)

경되었다.

그런데 CE는 업무인수자 CG에게 CF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인계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CF의 경우 [표]와 같이 2017. 10. 16. 과징금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37,35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표] CF 명의신탁 부동산 명세

(단위: 원)

연번	명의신탁자	지번	과징금	명의신탁 종료일	제척기간 만료일	비고
1	CF	-	7,144,000	2012. 10. 16.	2017. 10. 16.	미부과
2		-	19,536,000			
3		-	10,670,000			
합계			37,350,000			

자료: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향후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 ① 앞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 ○실 CE(현 □과)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사천시 ② 함안군

조 치 기 관 ① 사천시 ② 함안군

내 용

1. 업무 개요

사천시, 함안군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이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조세특례제한법」⁸⁵⁾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2014. 12. 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천시, 함안군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85) 2014. 12. 31. 시행, 법률 제12663호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유예기간 내에 감면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 지방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감사원 감사기간(2017. 10. 23.~12. 8.) 중 사천시와 함안군의 지방세 감면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천시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CH, 창업일 2014. 12. 2.)이 2015. 7. 6.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관내 토지(20,799㎡)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도 2년 동안 감면물건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⁸⁶⁾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 등 [별표 1] “사천시 지방세 등 미추징 명세”와 같이 지방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총 2명(법인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함안군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CL, 창업일 2014. 12. 4.)이 2014. 12. 18.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관내 필지⁸⁷⁾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도 2년이 지나기 전인 2015. 1. 5. 감면물건을 처분⁸⁸⁾하였는데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고 있는 등 [별표 2] “함안군 지방세 등 미추징 명세”와 같이 지방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총 4명(법인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추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취득세 등 계 607,724,550원(가산세 111,918,840원 포함)의 지방

86) 사천시 ㉠과는 2017. 7. 11. 현지 확인으로 ㈜♥♥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같은 해 7. 12.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자진신고 납부기한(2017. 8. 7.)이 지나도록 ㈜♥♥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과세 등 사후조치를 하지 않다가 감사원 감사기간 중(2017. 11. 17.) 과세예고 통지함

87) 토지(10,130,582㎡) 및 건물(3,863,46㎡)

88) ㈜★★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관내 필지는 2015. 1. 5. 소유권 이전 합의 해제로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고 2015. 8. 26. 임의경매를 통해 ㈜●●가 소유권을 취득함

세가 추징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주식회사 ♥♥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납부 지연 시 독촉, 압류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후관리할 것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함안군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별표 1] “사천시 지방세 등 미추징 명세”와 같이 주식회사 ♥♥ 등 2명(법인 포함)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 계 245,861,970원(가산세 10,411,200원 포함)의 지방세를 추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함안군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별표 2] “함안군 지방세 등 미추징 명세”와 같이 주식회사 ★★ 등 4명(법인 포함)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 계 361,862,580원(가산세 101,507,640원 포함)의 지방세를 추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사천시 지방세 등 미추징 명세

(단위: 원)

연 번	납세자명 (취득일)	취득물건	세목별	미추징세액			추징사유
				본세	가산세 ¹⁾	계	
계	-	-	취득세	169,500,000	9,888,000	179,388,000	-
			농어촌특별세 ²⁾	8,475,000	14,400	8,489,400	
			지방교육세 ³⁾	23,704,290	508,800	24,213,090	
			재산세 ⁴⁾	33,771,480	0	33,771,480	
			계	235,450,770	10,411,200	245,861,970	
1	- (2014.11.17.)	-	취득세	121,500,000	0	121,500,000	취득일로부터 3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지방세 특례제 한법」 ⁵⁾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추징대상
			농어촌특별세	6,075,000	0	6,075,000	
			지방교육세	18,904,290	0	18,904,290	
			재산세	33,771,480	0	33,771,480	
			소계	180,250,770	0	180,250,770	
2	(주)♥♥♥ (2015. 7. 6.)	-	취득세	48,000,000	9,888,000	57,888,000	최초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조세특례 제한법」 ⁶⁾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추징대상
			농어촌특별세	2,400,000	14,400	2,414,400	
			지방교육세	4,800,000	508,800	5,308,800	
			재산세	0	0	0	
			소계	55,200,000	10,411,200	65,611,200	

주: 1. 2017. 11. 20. 기준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3. 「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4. 취득일 ~ 추징사유 발생연도로 계산한 금액
5. 2014. 7. 22. 시행, 법률 제12329호
6. 2014. 12. 31. 시행, 법률 제12663호

자료: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합안군 지방세 등 미추징 명세

(단위: 원)

연번	납세자명 (취득일)	취득물건	세목별	미추징세액			추징사유
				본세	가산세 ¹⁾	계	
계	-	-	취득세	222,923,120	94,181,940	317,105,060	-
			농어촌특별세 ²⁾	11,723,080	2,593,740	14,316,820	
			지방교육세 ³⁾	21,138,460	4,731,960	25,870,420	
			재산세 ⁴⁾	4,570,280	0	4,570,280	
			계	260,354,940	101,507,640	361,862,580	
1	(주)★★ (2014. 12. 18.)	-	취득세	124,000,000	62,744,000	186,744,000	최초사용일로부터2년간 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⁵⁾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추징대상
			농어촌특별세	6,200,000	1,897,200	8,097,200	
			지방교육세	1,240,000	3,794,400	16,194,400	
			재산세	0	0	0	
			소계	142,600,000	68,435,600	211,035,600	
2	- (2015. 6. 30.)	-	취득세	15,000,000	4,345,500	19,345,500	최초사용일로부터2년간 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⁵⁾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추징대상
			농어촌특별세	750,000	67,270	817,270	
			지방교육세	1,500,000	134,550	1,634,550	
			재산세	342,440	0	342,440	
			소계	17,592,440	4,547,320	22,139,760	
3	- (2015. 2. 12.)	-	취득세	57,000,000	16,393,200	73,393,200	최초사용일로부터2년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않아 「지방세특례 제한법」 ⁶⁾ 제5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추징대상
			농어촌특별세	2,850,000	249,660	3,099,660	
			지방교육세	5,700,000	499,320	6,199,320	
			재산세	1,562,730	0	1,562,730	
			소계	67,112,730	17,142,180	84,254,910	
4	- (2015. 1. 19.)	-	취득세	26,923,120	10,699,240	37,622,360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 2년 미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⁶⁾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추징대상
			농어촌특별세	1,923,080	379,610	2,302,690	
			지방교육세	1,538,460	303,690	1,842,150	
			재산세	2,665,110	0	2,665,110	
			소계	33,049,770	11,382,540	44,432,310	

주: 1. 2017. 11. 20. 기준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3. 「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4. 취득일 ~ 추징사유 발생연도로 계산한 금액

5. 2014. 12. 31. 시행, 법률 제12663호

6. 2014. 7. 22. 시행, 법률 제12329호

자료: 합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수입·지출 등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업무 개요

의령군은 2008. 7. 16.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표 1]과 같이 의령군 친환경골프장⁸⁹⁾(이하 “골프장”이라 한다)을 개장한 후 골프장 이용요금을 수입 처리하고 골프장 운영 경비를 지출하는 등 골프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표 1] 골프장 설치 명세

구분	내용
소재지	-
규모	9홀
부지면적	238,838㎡
골프장 조성비	1,688백만 원
시설물	클럽하우스(1,945㎡), 그늘집(32㎡), 경기진행실(24㎡), 주차장(850㎡, 90면)
준공일	2008. 6. 20.

자료: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89) 의령군 친환경골프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으로 설립됨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의령군은 ① 골프장 할인요금 대상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②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골프장 수입을 등록하거나 전자자금 이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③ 골프장 예약관리시스템의 입력 내용이 임의로 변경 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고 있고, ④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도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는 등 전반적인 회계 업무 처리가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골프장 할인대상자 확인 불철저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구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2016. 11. 9. 조례 제2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골프장 운영조례”라 한다) 제24조 제1항 및 [별표 2]⁹⁰⁾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주민, 상이군경,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는 할인요금(9홀은 7천 원, 18홀은 1만 원 할인)을 적용⁹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골프장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할인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할인대상자인지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90) [별표 2] 친환경골프장 이용 요금표(2016. 11. 9. 조례 제2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홀별	이용요금(1인당)			
	평일		휴일	
	일반	할인	일반	할인
9홀	25,000원	18,000원	32,000원	25,000원
18홀	45,000원	35,000원	60,000원	50,000원

91) 2016. 11. 9. 골프장 운영조례 개정(2017. 1. 1. 시행)으로 할인대상자가 군민으로만 한정됨

따라서 위 관서는 골프장 할인대상 신청자로부터 신분증과 할인대상자인지를 입증할 서류를 함께 제출받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⁹²⁾을 통해 실시간 주민등록 조회를 활용하는 등으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여 할인요금을 적용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 ■사업소는 2014. 8. 7. 이후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가 신설되어 관련 법령상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복사본 등 본인 확인 증빙서를 제출받지도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 조회 기능⁹³⁾도 활용하지 않은 채 골프장 프런트 직원⁹⁴⁾이 할인대상자의 신분증을 육안으로만 확인한 후 골프장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었다.

그 결과 감사원 감사기간(2017. 10. 23.~12. 8.) 중 의령군이 요금할인을 제대로 적용하였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표 2]와 같이 2014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4,668명에 대해 2억 5,200만여 원의 요금을 할인해 주었으나 이 중 1,659명(8,022회, 할인요금 7,900만여 원)에 대해서는 이들이 할인대상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2017. 12. 8. 현재까지도 위 관서는 이들이 할인대상자인지 여부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2) 「전자정부법」 제37조 제1항(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두고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도록 규정)을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고객의 주민등록 주소지 등의 열람이 가능함

93) ■사업소는 위 관서 본청과 협의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음

94) 골프장 프런트 직원은 골프장 이용자 접수, 이용요금 징수, 골프장 예약관리시스템에 골프장 이용자 인적사항 및 이용요금 입력, 일일 이용요금 정산 및 수납된 현금의 공금계좌입금 등의 업무를 처리

[표 2] 골프장 이용요금 할인 명세

(단위: 명, 회, 원)

구분	총 할인 내역			할인대상자가맞는지 소명되지 않은 할인 내역		
	인원	횟수	금액	인원	횟수	금액
2014년	1,310	6,492	63,267,000	501	2,064	20,418,000
2015년	1,444	8,222	80,456,000	531	3,089	30,434,000
2016년	1,471	7,944	77,535,000	569	2,764	27,361,000
2017년 (10월까지)	443	2,587	23,869,000	58	105	993,000
합계	4,668	25,245	245,127,000	1,659	8,022	79,206,000

자료: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 제39조 및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징수관은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의 지급명령,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등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하 “e-뱅킹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⁹⁵⁾ 제3장 ‘지방공기업 운영기준’ II. ‘조직 및 인력운영 기준’ 4. ‘투명한 윤리경영의 제도화’의 내용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이하 “로바스시스템”이라 한다) 확산을 통한 회계처리

95) 위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설립 시 타당성 검토 등과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 미비에 따른 제도적 보완 대책 차원에서 마련한 기준임

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 의령군은 로바스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위해 일일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한 수입징수를 결의한 후 로바스시스템에 이를 등록하고 지출 시에도 로바스시스템의 e-뱅킹시스템 기능을 사용하여 전산상으로 자금 이체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의령군 ■사업소 CI는 2016. 7. 7.부터 2017. 12. 8. 현재까지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한 수입 징수결의 및 정산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일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한 수입징수를 결의한 후 로바스시스템에 이를 바로 등록하지는 않고 일일 업무마감 후 골프장 프런트 직원⁹⁶⁾으로부터 일일 골프장 수입 및 경기인원 현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입금증 등을 제출받아 경기인원과 수입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징수결의서에 날인하고 경기기획팀장 및 소장의 결재를 받으면서도 관련 규정 미숙지와 전임자로부터 한 달에 한 번 등록하는 것으로 인계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징수결의 내역을 로바스시스템⁹⁷⁾에 매일 입력하지 않고 2016년도는 월 1회⁹⁸⁾ 징수결의 등록을 하였으며 2017년에는 10월 중순경(날짜 모름)에 9개월 치 징수결의를 일괄 등록하였다.

96) 프런트 직원은 업무마감 후 일일 골프장 수입 및 경기인원 현황, 프런트 일보, 일일 입금 현황, 이용권 판매 현황, 이용권 회수 현황, 신용 및 체크카드 집계 현황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입금증 및 골프장예약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수입 징수결의서 등을 수입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97) 위 관서는 2009년부터 매년 로바스시스템 사용료(2014년 4백만여 원, 2015년 4백60만여 원, 2016년 5백만여 원, 2017년 6백만여 원)를 납부하고 있음

98) 2016년 상반기까지 담당자에 따라 로바스시스템에 징수결의 내용을 매일 입력하거나 월 1회 등록하였고, 2016년도 하반기에는 담당자 CI가 로바스시스템에 월 1회 징수결의 등록을 하였으며 등록할 때 일일 징수결의 내역을 일자별로 등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10월 중순에 9개월 치 징수결의를 등록하면서 일자별이 아닌 월 징수결의 내역만 입력함

또한 위 관서 ㉠사업소 CJ는 2016.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골프장 계약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임자로부터 지출 업무 처리 시 로바시스템의 e-뱅킹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인수인계 받고도 e-뱅킹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산상으로 자금 이체를 하지는 않고 전산 처리가 미숙하고 전기요금 고지서 등 각종 고지서는 직접 군금고(농협)에서 수납 처리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입금의뢰명세서를 출력하여 군금고에 직접 가서 입금 처리⁹⁹⁾ 하였고 후임자인 CI에게는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하여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위 관서는 골프장 이용요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 회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

4. 골프장 예약관리시스템 회계사고 방지 기능 등 미흡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위 관서 ㉠사업소는 골프장 이용객이 골프장을 방문하면 프런트에서 본인 확인 등을 거쳐 골프장 예약관리시스템에 이용객의 인적사항, 인원, 할인대상자 여부, 입장요금, 카드수수료, 수입 및 감액 결의서 등을 등록하고 등록 내용에 따라 일일 입금 현황 및 일일 정산 현황 등이 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골프장 수입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골프장 수입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객 등록 및 이용료 수납 사항이 입력된 골프장 예약관리시스템의 내용이 임의로 변경될 수 없도록 하고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골프장 예약관리시스템이 연동되도록

99) 2016. 7. 1. 이전에는 로바시스템을 통해 e-뱅킹시스템을 사용하여 자금을 이체 처리함

하는 등으로 골프장 예약관리시스템의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위 관서(■사업소)는 골프장 예약관리시스템이 사용자별 권한도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일일 정산 후에도 예약관리 입력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 수정 시 로그기록도 남지 않아 데이터 수정 여부도 알 수 없고 이용객의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시 단말기에서 처리 후 결제 내용이 위 시스템으로 전송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위 관서는 이용객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위 골프장 예약관리 시스템에 직접 입력함으로써 결제금액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수납금액과 전산상 수납액이 다를 경우 전산 조작의 가능성이 커 회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

5. 소득세 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한 후 납부기일 도래 시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했고 기간제 근로자 중 월급여액이 적어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이 신고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사업소)는 2014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약 4년간 기간제 근로자¹⁰⁰⁾ 103명에 대해 인건비(7억 6,300만여 원)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한 후 납기 도래 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지 않고 [별표] “기간제 근로자 소득세 등 원천징수 명세”와 같이 23명(인건비 3억 1,600만여 원)은 회계법인을 통해 소득세를 대리 신고하여 납부하고, 소득세가 발생된 다른 36명(인건비 1억 3,700만여 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으로써 소득세 등 계 190만여 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소득세 원천징수 비대상자인 나머지 76명(인건비 3억 9백만여 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¹⁰¹⁾를 작성하여 근로소득을 관할 세무서에

100)기간제 근로자는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락카를 관리하는 근로자, 코스 제조작업 인부사역자 등이 있음

10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근로자의 인원, 소득지급액, 징수세액, 납부세액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제출하지 않는 등 소득세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 신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① 향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주민등록 조회 등을 실시하여 고객 편의 도모와 할인요금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② 로바스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의 일일결산을 실시하고 e-뱅킹시스템을 이용한 지출 업무 처리를 통해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③ 골프장 예약관리시스템에 신용 및 체크카드 결제 기능을 연계하고 사용자별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으로 입력 내용의 임의변경을 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며, ④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자는 근로소득이 신고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 ① 친환경골프장의 수입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친환경골프장 예약관리시스템의 입력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위 시스템에 연동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 ② 앞으로 할인대상자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고,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저해

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지출 업무를 처리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자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 표]

기간제 근로자 소득세 등 원천징수 명세

(단위: 명, 원)

구분	총 기간제 근로자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						소득세 원천징수 비대상자	
	인원	인건비	대리 신고 납부자 ¹⁾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자 ²⁾			인원	인건비
			인원	인건비	소득세 등	인원 (중복)	인건비	소득세 등		
2014년	26	147,845,780	0	0	0	5 (3)	41,832,700	162,820	24	106,013,080
2015년	22	163,675,060	7	93,641,460	245,740	1 (1)	1,143,360	1,130	15	68,890,240
2016년	25	195,749,080	8	116,132,200	466,380	11 (11)	14,541,120	27,470	17	65,075,760
2017년 (10월까지)	30	256,669,080	8	107,011,020	671,250	19 (17)	80,145,980	339,940	20	69,512,080
합계 (연인원)	103	763,939,000	23	316,784,680	1,383,370	36 (32)	137,663,160	531,360	76	309,491,160

- 주: 1. 대리 신고 납부자는 ■사업소의 회계 업무를 위임·대행하는 회계법인이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대리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대상자를 말함
2.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자는 회계법인을 통해 대리 신고도 하지 않은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 규정에 따른 간이세액표상 근로소득 과세 기준인 월급여액(2014년도 월 소득 114만 원, 2015년 이후는 월소득 106만 원) 이상을 받은 대상자로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자임
3. 제초작업 등의 인부사역자는 대부분 월별 급여액이 근로소득 과세 기준보다 적어 소득세 원천징수 비대상자에 해당하나 월 급여액이 근로소득 과세 기준보다 많은 경우도 발생하여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자에 포함되므로 중복인원 발생
4. 소득세 등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액으로 1인 가구 기준의 소득세 등의 금액임

자료: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